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차 세계 대전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약 반세기가 가깝게 갈라져 살아온 우리 민족은 ‘민족분단’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각 다른 독자적인 생활을 추구한 결과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를 가진 이질적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을 비롯하여, 사회윤리와 관습, 규범, 풍습, 습관, 태도, 행동 등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남북한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갈등적 대결구조속에서 서로간의 접촉이나 교류를 거의 단절한 채 상호대립과 대결, 경쟁이라는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왜곡된 부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면서, 상호이해나 화합보다는 상호불신과 대결의식, 나아가 적대의식마저 가지게 되었다. 결국,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초래하면서 남북한간의 반목과 대결로 얼룩진 분단의 반 세기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성을 훼손시키고 민족의 이질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분단상황이 약 반 세기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분단이후 서로 다른 체제속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장함으로써 민족적 동질감과 민족문화의 공통성을 공유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각 사회의 주도적 인구층(1990년 기준으로 약 80%)으로 등장하면서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분단전세대가 아닌 분단후 세대들에 의하여 육성되고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화는 남북한간의 이질화의 주 핵심을 이루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매우 포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분단상태가 지속될수록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으며,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심화될수록 변화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이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성은 회복이 어렵게 되고 그만큼 파급효과가 커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둥이며 주인공으로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화 및 적대화현상은 전체 민족적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비록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나 체제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남북한은 같은 핏줄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지닌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즉, 분단의 장벽을 넘어선 민족공동체 의식을 남북한 청소년들에게 형성시켜 주는 것은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민족적 과제중의 하나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절된 역사속에서 심화된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 적대화현상을 극복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민족적 화해와 화합의 차원에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을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하면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를 실현시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에 관한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비롯하여 연구내용, 방법, 제한점을 다룬 제 I 장의 서론 이외에, 동서독 청소년교류, 남

북한 교류 및 청소년교류,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방안,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의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Ⅱ장에서는 동서독 분단이후 통합이전까지 전개되었던 동서독 청소년교류 실태와 이를 뒷받침한 동서독의 청소년교류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분단과정에서 실시되었던 동서독 청소년교류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교류의 내용, 방법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추진과정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실태, 그리고 교류의 결과, 즉 동서독 관계 및 통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동서독 청소년교류사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남북분단 이후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남북한 교류 및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실태를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분석·검토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위치와 일반적인 성격을 비롯하여 그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앞의 Ⅱ장과 Ⅲ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교류의 목표, 교류의 추진주체, 추진과정에서의 태도, 추진방향과 방법등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예측되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상황에 따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단계적 추진과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사전준비와 대책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부의 의지와 지원대책,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보다 체계적인 정치교육 실시, 남북한 청소년 비교연구의 활성화 등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위한 제반여건과 이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주제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연구논문과 문헌, 관계학술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나

타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독일의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독일 연방여성청소년성, 독일정치교육센터, 독일연방청소년연맹, 독일청소년연구소 등 독일의 청소년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관련인사와 전문가들과 면담을 하고 수집한 관련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3. 연구의 제한점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경제, 예술, 사회, 문화 등 어떤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교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주체인 남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의 현황, 특성 및 배경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 비로서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차 연구인력과 시간의 제한으로 이러한 연구를 함께 병행하지 못하였다.

세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이념적이면서 큰 사회적 여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서,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실현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교류의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현실상황속에서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남북한 관계는 예측불가능한 돌발상

황이 벗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들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고 시론적 접근에 그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기본방향과 대비책을 제시하려는 것이지 교류방안 그 자체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교류정책을 모색하고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일회적인 연구로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 동서독 청소년 교류정책과 교류활동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독일의 통일은 같은 분단국인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분단이후 동서독은 우리와 달리 그들의 분단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계속하였다. 특히, 서독은 동서독간의 긴장완화에 앞장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접촉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끌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비록, 동서독 관계가 남북한 관계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는 우리의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합의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의 사례, 특히 동서독의 공존 및 통합의 밑거름이 되었던 동서독 교류사례를 고찰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서독이 그들의 분단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였고,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였으며, 교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인지 동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동서독 청소년교류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직접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는 독일의 역사, 동서독의 체제 및 통일정책, 동서독의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힘든 연구이다. 그러나, 연구인력과 기간의 제한으로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발전과정만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둘째,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동서독 관계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잘 정리되거나 연구되어 있지 않다.

세째,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연방차원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청소년의 교류사업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학교, 청소년단체, 교회 등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나 상세한 교류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또한 다양한 단체와 연구소에서 나오는 광범위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들다.

네째, 서독의 내독관계성에서 청소년교류지침(Grundlinie für Jugendaustausch)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재정지원하였지만, 동독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그 지원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동독 정부는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동서독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취급하여 동서독 청소년의 교류사실 자체조차 밝히는 데에도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실제 교류내용이 공개되면 될수록, 동독은 거부반응을 보여 동서독 교류의 횟수가 점차 줄어들기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신교 청소년단체를 들 수가 있다. 신교 청소년단체들은 서독 청소년단체중에서 동독의 청소년단체와 가장 밀접하고 활발한 접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거부반응에 의하여 이들 신교단체간의 접촉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가 실제 동서독 청소년간에 이루

어진 교류활동들을 모두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단후 독일통일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의 분단현실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유의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본다.

2. 동서독 청소년교류 정책

(1) 서독의 동서독 청소년교류 정책

동서독 분단이 지속됨에 따라 서로 상반된 체제에서 생활하는 동서독 주민, 특히 청소년들간에 이질감과 적대감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호소외현상이 일어나 민족의 공통성과 일체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장래 독일의 통일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서독은 이러한 분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써 동서독간의 교류, 특히 모든 접촉의 기본이 되는 인적 교류를 중시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철의 장막을 넘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교류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이, 서독 정부는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동서독 접근의 대전제일 뿐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고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교류확대가 동서독의 정치적 관계에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독 정부는 보다 많은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을 집중시켜 왔다.

서독 정부는 일찍부터 문호를 개방하고 청소년단체, 교회를 비롯한 민간차원에서의 동독과의 교류를 허용하면서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였다. 서독 정부는 교류의 대상, 방법, 내용등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을 민간단체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

을 때에는 어떤 조건없이 아낌없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서독 정부는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여행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며, 학교나 청소년단체등 소속단체가 관련단체와 협의를 한 후에 내독성에 신고만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 수속절차를 간단하게 하였다. 또한, 서독 정부는 청소년들의 동독으로의 여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동독을 여행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체재비 및 교통비를 보조하였다. 1인당 1일 체재비를 5마르크씩 지불하였고 기차요금은 전액무료로 전세버스대절료는 85%부담하였다.

한편, 서독은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을 방문할 때,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기전 동서독간의 왕래가 어느 정도 자유로웠을 때에는 서독을 방문한 동독 청소년들에게는 국경지역 도시에서 어느 유스호스텔에서나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무료숙박권을 발급하였다.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공식화된 1980년대에는 서독을 방문한 동독 청소년들에게 1인당 20마르크씩 여행보조금을 지불하였고, 열차를 비롯한 공공 교통수단을 무료 또는 대폭할인을 해 주었다. 그리고 서독의 모든 문화시설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게 하였고, 모든 문화행사의 입장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주었다.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외에, 서독 정부는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민의식을 확고하게 정립시켜 줌으로써 서독의 청소년들이 동독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회화될지 모르는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위험성에 철저한 대비를 하였다. 민주주의를 인식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는 민주교육을 중점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심어 주었다. 또한, 독일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동독에 관한 객관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동독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와 함께 한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치교육이외에, 동독을 여행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독여행에

관한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동독으로 출발하기 전에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전 독일문제연구소나 내독관계성 등 여러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통하여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 및 동독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국경통과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독 여행이후에는 동독체제에 대한 사전지식과 여행체험을 비교하여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사후 평가회를 열었다.

(2) 동독의 동서독 청소년교류 정책

동독의 동서독 청소년교류정책은 서독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독에게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은행차관에 대한 정부보증까지 해주는 등 막대한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서독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인하여 동독은 서독이 정치적, 인도적으로 희망하는 사항들을 어느 정도 협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의 경제적인 지원은 동독 경제체제의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 서독과의 교류는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사상을 파급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체제안정에 역기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독 정부는 교류정책에 있어서 경제교류이외의 다른 교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가능한 제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동독 정부가 서독으로부터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 못하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 정부가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허용한 것은 서독과의 청소년교류를 단순히 서독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이념교육으로 무장된 동독 청소년들을 자본주의라는 다른 체제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혐오감 및 거부감 등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여 동서독의 분리화를 가속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제위주의 동독 사회에서 자칫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서독으로의 방문이나

여행이라는 일정한 탈출구를 제공하여 다른 분야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한 불만을 극소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독 정부는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의 자유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여전히 우려하여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동독 정부는 체제 맹종을 조건으로 한 일종의 포상으로서, 즉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나 직장에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여 동독 체제에의 순응이 입증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서독으로의 여행과 방문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은 반드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와 가정에 묶여서 동독 체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서독으로의 여행은 주로 동독의 유일한 청소년단체인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의 간부로서 25세이상의 사람을 중심으로 허락하였고, 기혼자는 부부 중 1명은 꼭 동독에 남아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독 정부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이 동서독 청소년간의 교류를 담당하게 하여 모든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대화와 만남을 감시하였다. 동독 정부는 서독을 방문한 동독의 청소년들이 그들과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서독의 청소년단체와 선별적으로 접촉하도록 하였고, 동독 정부의 감시원을 동행시켜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대화와 접촉을 비롯하여 정보획득을 통제하였다.

동독 정부는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으로의 방문이나 여행에도 많은 제약을 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 방문과 여행은 다른 곳에 비하여 비교적 비용이 비싸고, 수속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웠다. 통과교통조약과 기본조약의 발효이후 이 조약들의 여행완화조치로 서독 주민들의 동독으로의 여행이 엄청나게 증가하자, 1980년 동독 정부는 동독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서독 주민들에 대한 비자발급의 수수료와 통행료이외에 최저 환전 금액을 인상하였다. 이전에는 환전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에게조차 1인당 7마르크 50페니씩 계산하여 동독 국경에서 동독화폐로 강제환금을 하도록 하

여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으로의 여행과 방문에 경제적인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또한, 동독을 방문한 서독 청소년들에게는 방문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였으며,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서독 청소년의 동독 방문계획(여행경로, 방문자, 숙소 등)은 서독 주재 동독상주 대표부를 통하여 사전 합의는 물론 사전허가가 필요하였고, 여행에는 반드시 1명의 동독측 수행원이 늘 동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수락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내에서의 자유로운 여행이나 행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동독 청소년과의 만남은 오로지 동독체제에 맹종하던 청소년단체 FDJ의 간부들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였다. 이런 공식적인 만남의 외 다른 만남은 비록 우연히 이루어진 경우라도 언제나 불법이라고 매도되었다. 따라서, 많은 서독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동독에 체류하는 동안 규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감시를 항상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서독 청소년들을 통제하였다. 특히, 친척방문이나, 수학여행이나 청소년 단체 여행과 같이 조직된 여행이 아닌 개인 여행은 더욱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았다.

3.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발전과정

1945년 독일분단이후 통합이전까지 동서독은 비록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단절됨이 없이 꾸준히 청소년교류를 계속하여 왔다. 청소년문제는 정치적으로 무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서독간의 청소년교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하여 제한되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그 발전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동서독 관계중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 발전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45

년 분단이후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으로 동독 청소년단체인 FDJ 주도하에서 동서독 청소년단체간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 둘째, 1970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으로 서독 청소년단체인 DBJR 주도하에 동서독 청소년단체간의 활발한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진 시기; 셋째, 1981년부터 1989년 동서독 국경이 개방되기까지의 기간으로 동서독 청소년의 단체관광여행, 도시와 대학간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된 시기; 네째, 1989년이후의 시기로 고정된 일정에 따른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자발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

제 1 단계 (1945년~1969년)

4대국의 명령(1946. 10. 29, 명령 63호)에 따라 1945년이래 분단된 동서독 지역간의 교통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1961년 베를린 장벽구축이전까지 적어도 베를린에서는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또 그 반대의 경우 방문목적이나 기간에 있어서 통제되지 않는 상호왕래가 정상적이었다. 이에 동서독 청소년간의 접촉과 왕래는 무척 자유로웠다.

이 단계에서의 청소년교류는 “자유독일청소년단(FDJ)”가 동서독 청소년단체간의 대화와 접촉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면서 동서독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서독 청소년단체의 지도자들은 전체 독일청소년연맹의 형성이라는 목적아래에 간헐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서로 만났다. 그리고, 1961년 베를린장벽이 구축되기 전까지, 즉 분단된 동서독지역간의 교통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던 시기에는 동서독 청소년의 인적 교류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청소년교류에 비하여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미비하고 부진한 것이지만 연 평균 약 5%의 비율로 증가되었다.

1945년 7월 31일 주독 소련군군정청(SMAD)은 반파시스트적인 청소년위원회인 중앙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0일 호네커(Erich Honecker)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1946년 3월 소련점령지역내의 유일한 청소년단체로서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을 설립되었고, FDJ는 독일의 통일과 전 독일의 청

소년협동구조인 청소년연맹의 창설문제를 제창하였다. FDJ의 제안에 연합군의 서부지역의 청소년단체들이 호응함으로써 1946년 10월 호텐마이센(Hohenmeißen)에서 동서독 청소년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부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단체와 소련점령지역의 FDJ 청소년 100명이상이 ‘민주주의적인 정신에서 독일청소년연맹을 형성한다’는 목적아래에서 참가하였고, 이 만남의 목적과 의의를 전독일청소년들에게 환기시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FDJ는 1947년부터 보다 큰 청소년조직들과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면서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접촉영역을 점점 더 넓혀갔다. 1947년 5월 소련점령지역 보겐제(Bogensee)에서 서부점령지역의 민주주의적인 청소년조직들과 FDJ출신인 몇몇 청소년단체대표자들이 ‘독일공화국은 분단될 수 없다’는 주요 목적 아래에서 전독일청소년연맹을 형성하기 위한 협동형식을 논의하기 위하여 만났다. 1947년 11월 카톨릭 청소년단체의 초대로 알텐베르크(Altenberg)에서 FDJ와 서부지역의 청소년단체대표자들이 다시 만났다. 이 모임에서 FDJ대표단의 지도자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전 독일 청소년연맹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교류도 미·소간의 대결로 동서냉전이 고조됨에 따라 자연히 제동이 걸렸다. 1952년 5월 FDJ 담당자인 필립 뮐러(Philip Müller)가 에센(Essen)에서 죽었고, 그해 겨울 FDJ는 신교도 회원들에 대한 박해와 체포를 자행하면서 신교도를 반대하는 결렬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953년 6월 FDJ는 파업을 하는 데모대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동독정부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주적인 청소년단체로서의 신용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FDJ의 활동으로 인하여, FDJ의 조직과 활동이 서독에서는 1951년 6월부터 금지되었다. 1954년 11월,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은 비스바덴(Wiesbaden)의 위원회에서 소련군점령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된 모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석방, 국가청소년조직으로서 FDJ의 독점금지, 다른 청소년 조직의 인가, 청소년학습지의 자유로운 판매 등을 요구하면서

FDJ와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유보하였다.

이에 FDJ는 이러한 DBJR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지만, DBJR과 대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1955년 고데스베르크(Godesberg)에서 FDJ와 DBJR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FDJ와 DBJR간의 교섭은 깨어졌다. 마침내 1958년 3월, DBJR은 FDJ와의 독일의 재통일을 위한 모든 대화, 교섭, 또는 협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에 반대하여 FDJ와 작별활동을 시작하였다. 1964년 10월 DBJR은 램샤이드(Remscheid)성명을 통하여 분단을 유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모든 경향에 반대를 하고, 민족의 이해와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DBJR은 동독의 주민과 청소년들과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서신과 성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비하여, FDJ는 2개 국가·2개 민족론에 입각한 동서독의 분리를 지지하는 서신과 성명을 계속 발표하였다.

이러한 FDJ와 DBJR사이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좌파적인 청소년 조직과 연합, 특히 ‘독수리단(Falken)’과 ‘독일의 자연을 아끼는 청소년단(Naturfreunde Jugend)’등의 독일사회주의 청소년단(Die Sozialistische Jugend Deutschlands)들은 독자적으로 FDJ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접촉과 대화를 계속하였다.

FDJ와 DBJR간의 대화와 접촉은 양단체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 관계가 소원해져서 냉전의 관계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두 단체는 1968년 소피아에서 열렸던 ‘제9회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와 같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계속 접촉하였다.

제 2 단계 (1970년~1981년)

1969년 브란트(Brandt) 수상외의 동방정책을 기점으로 1972년 ‘동서독 일반통행협정’과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1973년 동서독이 동시에 UN에 가입함으로써 동서독 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호교류와 협력체제가 활성화되었다.

동서독 관계는 비록 타협될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였지만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동서독 청소년교류와 접촉도 주로 서독측의 주도에 의하여 전진적인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0년대 이래로 동서독 청소년관계는 무엇보다도 동서독 청소년단체들에 의하여 집요하게 형성된 공식적인 연합관계를 이루면서 대화와 접촉이 증가하였다. 동서간의 냉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속에서 DBJR의 주도하에 DBJR과 FDJ간에 새로운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DBJR는 FDJ에게 계속적인 대화를 청하였고, FDJ가 DBJR의 이해에 근본적으로 함께 결합할 수 없다는 유보조건과 함께 초대에 반응하였다. DBJR과 FDJ가 양측의 유보조건과 관계없이 첫번째의 의견교류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하여 만남이 이루어졌다. 1972년 4월, DBJR은 ‘청소년을 위한 동방협약과 그 전망’이라는 주제아래 청소년정책 회의를 열어 동서독 청소년교류사업을 DBJR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1973년 8월 동베를린(E. Berlin)에서 열렸던 ‘제10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기회로 DBJR과 FDJ간의 접촉이 있었다. 이 세계축전이후 축전에 참가하였던 서독의 청소년단체인 독일청소년연합회 또는 청소년정치 연합회의 회원연맹은 동독의 독일 자유청소년위원회와 동독 노동조합의 청소년 위원회와 첫 공식적인 접촉을 하였다. 그 결과, 동독과 서독 대표단의 상호방문과 공동세미나 개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5년 1월, DBJR은 FDJ를 서독으로 초대하여 처음으로 비공식적인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답례로 FDJ가 DBJR의 간부들을 1976년 1월 동베를린(E. Berlin)에서 개최되었던 세미나에 초대하여 DBJR과 첫 공식적인 대화를 가지는 등 서로간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1973년까지는 서독의 청소년들만 동독을 여행방문하는 일방적인 것이었으나, 몇몇 동독의 청소년단체들도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다.

DBJR과 FDJ는 1978년 1월 본(Bonn)에서 두 단체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부록 I-3-2 참조). 이 협정에는 DBJR과 FDJ의 활동을 비롯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 상호발전과 공공활동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두 단체의 공식적인 대표단의 정기적인 교류, 협정된 주제를 위한 학생대표단의 교류, DBJR과 FDJ의 공동주최 세미나 계획, DBJR과 FDJ의 회원조직들의 적절한 접촉의 환영 등 두 단체사이의 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형태가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DBJR와 FDJ의 공동사업중 세미나 활동은 매년 동독과 서독에서 번갈아가면서 활발하게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동서독 청소년단체내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관심에 대한 지지, 평화에 대한 관심, 상이한 사회질서에 따른 국가로부터 청소년단체연합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가 주로 많이 다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DBJR은 지금까지의 접촉을 전 회원중심으로 폭넓게 확대하여 나가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시도하였다. 1979년 4월 DBJR의 사절단이 처음으로 FDJ를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당시 국민교육장관인 마고트 호네커(Margot Honecker)와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확대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또한, 1981년 1월 DBJR의 의장단과 독일청소년위원회의 중앙부처간의 정상급 회담이 열렸고, 이 회담에서 서독 대표단과 동독의 청소년·가족·보건성장관인 안체·후비(Anche Hubie)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 3 단계 (1981년~1989년)

1981년 서독의 슈미트(Helmut Schmidt)수상이 동독을 방문하고 1987년 호네커(Erich Honecker) 수상이 서독을 방문하여 동서독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1986년 5월 6일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에서 두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Kulturab Kommen)을 체결함으로써, 지금까지 비공식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교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문화협정이후, 경제교류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학술, 체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여졌

고 동서독 도시와 대학간의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1년 4월 25일 ‘동서독 이주협정’이 체결되어 동독주민의 이주가 실현되고, 1988년 11월 동독 주민의 여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동독의 여행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동독 주민의 서독방문과 왕래가 다소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동서독의 관계개선으로 동서독 청소년간의 교류는 발전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새로운 교류체제의 막을 올렸다.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종래의 청소년 단체의 대표단위주의 친선방문외에 청소년의 단체관광여행, 동서독 학교간의 자매결연, 동서독 대학생교환 등 새로운 각도의 청소년교류 활동사업이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1981년 10월 서독 수상 슈미트(Helmut Schmidt)와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Erich Honecker)는 동독의 베어벨린 호수가(Werbellinsee)에서 동서독의 교류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만났다. 이 만남에서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종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청소년교류를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하여 동서독 청소년들의 단체관광여행이라는 새로운 만남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DBJR과 FDJ는 동서독 청소년 관광여행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였다. 1982년 9월, DBJR과 FDJ는 대대적인 관광차원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법칙과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에 청소년의 여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서독 청소년의 관광여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부록 I-2-1 참조). 이 청소년 여행계획에 따라 DBJR과 FDJ는 상호 긴밀한 유대속에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교류를 실행하였다.

1986년 5월 6일 동서독의 두 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문화협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시행되었던 동서독 청소년교류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록 실제적인 정치적 중요 가치에 비하여 미약하게 공표되었지만, 동서독 청소년의 교류에 관한 사항들이 문화협정 제11조에 규정되었다. 제11조에는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교류증진을 위하여 교류대상 단체를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있는 학생과 일반학생들에게 확대할 것으로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동독청소년들에게는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동서독 청소년단체의 지도자급중심이었고 관광 여행단 조직자들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문화협정이후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새로운 교류체제의 막을 올리면서 더욱 활발하여졌다. 1987년 9월 청소년 관광여행의 주선단체로 선정된 서독의 청소년여행사와 동독의 FDJ 청소년관광여행사간에 동서독 청소년(14세에서 30세까지)의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부록 I-2-2 참조). 이 협약은 1988년의 단체교류문제부터, 여행신청서류 및 절차, 비자문제 등 청소년 여행에 필요한 규정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이후, 동서독 청소년들의 관광여행은 광범위하게 시행되기 시작되었다.

1988년 10월 FDJ의 중앙위원회의 에버하르트 아우리히(Eberhard Aurich)의 서독방문을 계기로 FDJ와 DBJR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까지 협력하여 이루어온 사업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제안을 만들 것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부록 I-3-3 참조). 또한, 1988년 11월 공표된 동독시민에 대한 공무여행, 관광여행, 개인여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동독의 여행시행령에 18세미만의 동독시민이 동구권이외의 국가로 개인여행을 할 경우 신청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됨에 따라 동서독 청소년의 여행은 다소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잘 진전되어 갔고, 1980년 중반부터 그 규모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방문, 특히 관광여행은 실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방문은 학생들의 학급별 단체관광여행의 경우 전체의 75% 정도를, 청소년조직, 청소년 및 협회, 청소년 관련기관 및 기업들에 의한 교류는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적인 증가를 보였던 동서독 청소년관광여행의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동서독 청소년관광여행의 참가자

(단위 : 명)

연 도	동독으로 여행한 서독청소년들	서독으로 여행한 동독청소년들
1981	10,000	—
1982	15,000	300
1983	22,000	12,000
1984	36,000	300
1985	50,000	1,000
1986	50,000	3,000
1987	77,000	3,760
1988	78,000	5,000

* 숫자는 단지 동서독 관광여행의 척도에서 평가한 것으로 일일여행은 제외하였다.

자료 : DBJR 서류

그러나,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았다. 서독에서 동서독 청소년의 관광여행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정치가들의 시각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83년 서독내독성이 FDJ가 그들의 정치적 선동을 위하여 동서독 청소년관광여행을 이용하여 왔다고 보고한 헌법보호보고(Verfassungsschutzberichtes)사건은 동서독 청소년관광여행에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FDJ는 이러한 서독 내독성의 견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위협한 것으로 명백한 정정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여행은 계속되었지만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방문은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1984년 헌법보호보고에 의하여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청소년관광여행이 1985년 8월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이외에, 1986년 5월 문화협정이 체결된 후 얼마되지 않아 일어난 체르노빌(Chernobil) 방사능참사사건은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었다.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문화부는 방사능 위험 사태때문에 그 주의 모든 청소년들이 동독을 포함한 동부유럽국가로의 여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FDJ는 동독청소년들이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로의 모든 청소년여행이 얼마간 취소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들의 단체관광여행이외에 다양한 청소년교류가 실시되었다. 1986년 10월, 서독의 자아프로이즈(Saarlouis)와 동독의 아이젠 휘텐슈타트(Eisenhüttensthtadt)가 동서독 도시간의 최초의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동서독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대표단의 상호방문, 청소년단체방문, 공동문화행사, 체육경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7년 서독의 자르브뤼겐대학(Sarbürnigen)과 동독의 라이프찌히 대학(Leipzig)간의 자매결연을 효시로 급격히 증가한 대학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무척 제한된 범위이지만 동서독 대학생들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서독 대학생교환 프로그램이 1988년 5~6월 서독에서는 110명을, 동독에서는 300명을 파견예정으로 서독에서 장학생을 모집함으로써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사업들은 보다 많은 동서독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제 4 단계 (1989년 국경개방이후)

1989년 11월 9일 동독이 서독과 서베를린에 대한 모든 국경을 개방하고 1990년 2월 19일 브란덴부르크부근의 장벽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또다시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경이 개방된 후 개인 여행은 물론 단체여행이 지난 수년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공식방문이나 접촉을 위하여 고정된 일정과 같이 계획에 따른 엄격하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발적인 여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국경개방과 함께 동독지역 청소년의 서독에 대한 호기심이 급증하여 서독에서 동독으로보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게 되었다. 1989년 11월 9일부터 1990년 가을까지 사실상 모든 구동독 청소년들이 최소한 1회 내지 수회에 걸쳐서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여행한 것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의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동독의 대변혁으

로 인하여 과거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버렸다.

1990년 통일조약이 체결된 이후, 독일은 구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자유주의 가치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하여 제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유럽적인 청소년교류프로그램(유럽공동체, 독·불청소년교류 등)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다. 신설 5개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로서 각종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있다.

4.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특징 및 시사점

(1)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특징과 결과

동서독 정부가 각각 다른 정치적인 목표와 교류정책에 의하여 추진한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거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일방통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표 II-1 참조). 1980년 후반부터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으로의 여행과 방문이 증가되었지만,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 방문과 여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성격이 무척 판이하게 다르다. 서독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들로서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한 사람들인데 비하여, 동독 청소년들은 엄밀한 정치적 성분조사를 통하여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들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동독 청소년들은 주로 FDJ의 간부와 같이 특정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25세에서 30세사이의 장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동서독 청소년단체의 간부급의 접촉을 제외하고, 실제 서독이 원하는 청소년들간의 교류는 극소수(200~3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세째, 80년대에 들어서서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상호방문과 왕래가 증가하

였지만,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각자의 사회체제속에서의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동독 정부의 제한 조치에 의하여 동독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진 서독 청소년단체들과 선별적으로 접촉을 하였고, 서독 청소년 역시 FDJ의 대표들과 공식적이고 제한된 접촉만 하였다. 그러므로, 상이한 체제속에 성장한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공개적이고 순수한 접촉과 교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형식적인 교류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한정적인 개념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불균형적이고 제한적인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처음부터 원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서독 청소년들은 학교수학여행외의 동독방문은 주로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는 동독 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동독 정부의 제한된 조치에 의하여,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 청소년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서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의 선전 도구였던 동독의 TV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서독 청소년들은 극히 제한된 범위안에서 동독 주민들과 대화와 접촉을 하면서 동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서독과 상이한 동독의 체제 및 생활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고찰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한 서독의 목적은 처음 의도한대로의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다. 물론, 동독으로의 여행의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독일속의 동독이라는 한 나라를 동서독체제간의 차이가 아닌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인식하여 보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였다. 이들 청소년들은 동독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나아가 한 민족이라는 공통의 귀속 감정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동독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동서독간의 이질감만 재확인하게

되었다. 서독 청소년들은 동서독 국경지역에 동독이 설치한 국경봉쇄장치를 비롯하여 서독에 비하여 너무 열악한 동독 주민의 일상 생활환경, 그리고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동독의 신문과 방송내용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동서독 간의 생활차이를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동독체제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 정치적인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동독체제의 정통성이 내부적으로 위협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주민과의 접촉과 정보획득에 많은 통제를 받았으나, 서독 TV를 보거나 서독을 방문한 연금생활자들을 통하여 서독의 생활상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독의 방문을 통하여 서독의 자유와 풍부한 생활환경을 직접 접한 동독 청소년들은 동독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비판을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다른 분야와 달리 그렇게 활발하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서독 관계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불균형적이고 제한된 교류활동으로 진정한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므로,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벽을 허물고 동독을 자유화하여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고르바초프이후의 소련의 개방정책, 헝가리와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공산체제의 붕괴와 동독의 경제적인 파산이 동독의 체제가 붕괴하여 독일을 통일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동서독 관계개선 및 독일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하여도, 동독의 공산체제를 무너뜨린 민중봉기의 선봉역할을 한 동독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2)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주는 시사점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조건하에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서독 상황과 우리의 상황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으나, 이 차이점 못지않게 유사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서독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알맞게 잘 적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동서독 청소년교류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서독 청소년들이 만남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상호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실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동안 상당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동독과 집요하게 협상을 벌였다. 동독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주도하였지만 동독이 체제위협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서독은 성급하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들어 내면서 급하게 덤비지 않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동독을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실현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갔다.

둘째, 서독은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동독 정부와의 협상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반면에, 교류의 직접적인 수행은 정부보다 청소년단체, 조직, 협회, 각 개인등의 민간 차원에서 맡겨서 자유로운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서독은 청소년관련단체들에게 동서독 교류의 자율성과 함께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이에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은 동서독 청소년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고정시켜 동서독간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에 상관없이 동독과 많은 대화와 접촉을 하였고,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주도하면서 발전시켜 나갔다. DBJR은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산파역을 맡아 동서독의 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셋째,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각 주의 정부, 모든 연방의회와 정당 등 많은 정치단체들이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특

히, 간부대표단이나 전문가들만이 아닌 모든 집단과 단체들이 교류에 참가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청소년단체 및 교회 등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련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청소년개인들에게도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네째, 서독 정부는 동서독 청소년교류로 인한 서독 청소년들의 이념적인 오염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교육과 준비를 하였다. 서독은 민족의 분단현상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민정신교육인 정치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독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독에 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제공하였고, 동독방문후의 인식을 확인하는 사후평가회까지 실시하였다. 서독이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치교육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서독은 일반 국민들이 분단의 현실과 동독의 체제를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와 홍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전독일연구소, 각 대학의 연구소와 여러 정당의 동독 연구소 등 여러 관계연구소에서는 독일의 역사와 문화, 동독을 보다 깊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또한 연방 및 각 주의 정치교육본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이 서독은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보다 민족이 지향하여야 할 당연한 목표로서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서독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 상당한 인내와 끈기, 교류의 여건과

분위기조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그리고 세밀한 정책적 배려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당위성과 필요성만 지나치게 외형적으로 떠들면서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Ⅲ. 남북한 교류 및 청소년교류의 발전과정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지만 그나마 간헐적으로 제의되고 진행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남북한 청소년교류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남북한의 통일 및 교류정책과 유관해서 논의하여 남북한 관계범위내에서 발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 및 교류정책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남북한 교류의 발전과정을 함께 고찰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역사적인 위치를 점검하고 진단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지향할 바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본 연구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남북한 관계속의 전반적인 교류 및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진전 상황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위치, 특징 및 성격, 방법, 주체 등을 고찰하고 문제점과 한계점 및 전망을 검토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삼고자한다.

2. 남북한 교류의 발전과정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교류는 비록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속적이었지만, 그 전개과정은 중요한 사건이나 대화와 교류의 빈도 및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45년 분단이후부터 1970년 박정희대통령의 ‘8·15평화통일구상선언’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극단적인 냉전질서의 양극체제에서 남북한간의 대화나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

둘째, 1970년 8·15선언에서 1980년 제5공화국 탄생직전까지의 기간으로 남북한간의 최초의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질위원회를 통하여 분단후 처음으로 남북한간에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관계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된 시기

세째, 1981년부터 1987년의 제5공화국의 기간으로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국회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간에 대화와 접촉이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서울·평양 교환방문과 북한의 수해물자 인도·인수에 의하여 분단이후 최초로 공식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진 시기

네째,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분단후 최초로 정부공식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졌으며,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풀기 시작하였고, 민간 차원에서의 각종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

이러한 4단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마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교류정책과 남북한 관계속의 전반적인 교류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단계 (1945년~1970년)

남한은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통일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주력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남한은 통일에 부정적이었고 통일정책과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무척 소극적이었다. 이에 비하여, 남한보다 경제력과 국력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던 북한은 통일에 보다 적극적이었으며, 남한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이용하여 다양한 남북한 협상과 교류를 끈질기게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대남정책을 취하였다. 결국,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남한은 통일 및 남북한 교류에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지 못하고 북한의 제의 및 논의에 대하여 항상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 남한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남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데에서 출발하여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 또는 UN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론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평화통일론이나 남북교류론, 남북협상론을 불법시하고 이를 내세우는 세력들을 정권적인 차원에서 탄압하여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봉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화통일을 내세운 혁신정당인 진보당의 탄압을 들 수 있다. 1958년 1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북진통일)를 위반하였다는 구실로 진보당을 불법화하고 조봉암을 비롯한 간부들을 체포하여 투옥하였으며, 1959년 7월 31일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형하였다.

4·19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의 제2공화국은 평화지향적인 통일이념을 가졌으나, 기본노선에 있어 제1공화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통일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가졌다. 민주당정부는 진보주의자들의 급진적인 평화통일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억제하였으며, 경제면에서의 대북열세를 의식하여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여 통일전의 일체의 남북협상과 남북교류를 배격하고 거부하였다.

정치활동과 의견표출이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된 당시의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제1공화국시대에 억눌렸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정권적인 차원보다는 민간적인 차원에서 각계 각층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학생, 지식인, 혁신계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자들은 반외세적 민족자주통일을 원칙으로 다양한 통일방안과 다각적인 남북교류를 제기하였다.

혁신계 정당들은 ‘선통일 후건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 평화통일, 남북교류와 협상, 중립화론 등을 원외활동을 통하여 활발하게 제기하였고, 1960년 9월 ‘민족 자주 통일협의회’를 결성하여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1961년 5월 9일 서민호 민의원부의장은 통일을 위한 예비단계로 서신교환, 체육인교류, 1964년 동경올림픽 공동출전, 기자교류 등

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4월 혁명정신에 투철하였던 대학생들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문화교류, 서신왕래, 학생회담 및 남북한 학생교류를 제의하고 민족자주를 위한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61년 5·16군사혁명과 함께 제3공화국은 4·19혁명이후의 국내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이어면서 '선건설 후통일'의 기본방침아래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증강에 우선 순위를 둔 반공정책을 철저히 실시하였다. 1966년 6월 8일, 박정희대통령이 '남북통일문제는 70년 후반기에나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반공을 국시로 하여 통일논의 자체를 반공법으로 엄하게 금지시키고, 약화된 반공의식을 재강화하여 반공체제를 철저히 구축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어떤 협상이나 교류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내 정치사회문제와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외교강화를 통하여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5·16 혁명이후의 60년대를 남북한 문제의 암흑기라고도 보기도 한다.

(2)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

북한은 처음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을 채택하여 6·25라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으나, 전쟁후 소련과 중국의 반무력정책과 국내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후복구를 위한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하여 남한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화통일공세를 취하였다. 특히, 1958년 중공군의 철수와 함께 박헌영과 연안파를 숙청하여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고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경제기반을 남한보다 확고하게 다짐으로써 여유와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남북한 두 정부를 통합하는 연방정부수립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남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1965년부터 월남전에 깊숙히 개입하기 시작하자, 곧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으로 바뀌어 1968년 청화대기습사건, 울진·삼척 무장유격대 침공사건 등과 같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무력도발을 시도하였다.

1949년 6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 ‘민족 자주적인 통일’을 강조하여 조선인민에 의한 통일사업을 주장하고 남북 정당·사회단체 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 이후 북한은 정치 및 군사협상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과학, 예술, 체육 등 사회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제의하여 왔다.

1954년 10월 국토 통일을 위한 남북한 회담개최를, 1955년 3월 남북한 군대감축과 불침조약체결을, 1956년 6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회의개최를, 1957년 9월 남북 상호군사력의 10만 감축을, 1960년 8월 남북조선연방제를, 1961년 4월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개최와 남북선거실시 등 정치·군사협상을 제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경제발전 및 교류상설위원회 설치와 함께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제의하였고, 나아가 남한에 대한 물자제공 및 경제원조를 제의하였다. 1962년에는 1만톤의 양곡원조를, 1964년에는 30만톤의 쌀과 건축용 강철 10만톤, 10억kwh의 전력과 1만톤의 화학섬유등을 시멘트, 재목 및 기계류와 함께 매년 제공하고 200만명의 실업자를 북한으로 받아들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정치, 경제협상과 교류이외에 북한은 이산가족 및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왕래와 서신교환을 비롯하여 문학, 과학, 체육, 예술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 및 협조실시와 함께 이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70년 대초까지 계속하여 활발하게 제의하였다.

(3) 남북한 교류의 진전과정

1948년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남북한간의 인사왕래와 서신교환, 교역 등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상이 이루어졌다. 1945년 12월 미·영·소 3국의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2차 대전 종결에 따른 전후처리문제를 협의하고자 모인 회담에서 남북한 지역간 교역이 인정되어 남북한간의 우편, 전화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6·25전쟁 이전인 1950년 4월에 중단되었다.

1948년 초 이승만중심의 한민당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하여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자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민족분열로 간주하여 반대하면서 남부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은 한민당, 미군정 및 UN한국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8년 4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대민족회의'에 참여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가진 후에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이름으로 남한의 단독 정부의 수립에 대한 반대와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이후에도 남북한은 몇차례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서로 상반되는 이념과 정책으로 인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1954년 4월 26일, 1953년 7월에 조인된 휴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남한의 변영태외무장관과 북한의 남일외상을 포함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던 국가들의 외상들이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자 제네바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북한의 남일외상은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전조선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남북한은 상호 대립된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하여 그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버렸다.

또한, 1956년 멜본(Melbourne) 올림픽대회이후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동서독 단일올림픽팀에 영향을 받아 남북한은 1963년 스위스 로잔느(Lausanne)와 홍콩에서 제18회 동경올림픽대회의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한간의 체육회담을 3차례(1월 29일, 5월 17일, 7월 26일)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이 역시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남북한은 상대방의 국제대회의 출전을 막으려는 장외스포츠외교전을 펼쳤다.

결국, 남북한은 자주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민족통일을 모색하기 위한 통일논의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냉전구조적인 극한 대결상태로 치달았다.

제 2 단계 (1970년~1980년)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1년 미국과 중국간의 접근이 급진전되어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은 북경을 방문하여 상해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 및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세력인 미, 소, 중, 일 4강간의 새로운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동서냉전의 시대를 벗어나 긴장완화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서화해의 물결을 타고,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한은 민간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과 정부차원의 남북조절위원회를 통로로 하여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종래의 냉전적 대결관계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라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대화는 분단후 처음으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기본인식에서 서로간의 양보없이 확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화이상의 진전이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중도에 끝나버렸다.

(1) 남한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평화공존의 기운이 급진전된 국제 정세속에서 남한은 두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북한보다 경제력우위를 확보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조성된 분위기속에서 남한은 통일정책의 기본노선을 UN중재에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한국문제의 한국화’로 바꾸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에 입각한 과거의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8월 15일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하면서 북한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였다. 이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에 입각하여 1971년 대한적십자는 북한적십자에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을, 1972년 남북한 당국자간의 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비롯하여, 1974년 1월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체결’을 제의하고, 8월 ‘8·15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의 발표, 1979년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대화제의’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개선과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외에 남북한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제의하기도 하였다. 비록 북한에 의하여 거부되었지만, 물자 및 기술의 교류, 공동개발, 상품교환전시 등 경제교류와 협력, 국제대회의 단일팀참가 및 체육교류, 전화, 우편의 통신 교류, 고고학, 영화, 예술 등 사회·문화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여러 차례 제의하였다.

(2)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

북한도 동서화해무드를 비롯하여 남한의 경제건설, 북한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 기반이 약화되자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혁명적 대중로선의 무력통일정책에서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월남의 공산화(1975년) 및 10·26사태(1979년)를 계기로 다시 비타협적인 대남 강경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한 당국자 회담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남한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평화통일공세를 취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6·23선언에 대응하여 1973년 ‘조국 5대 통일강령’을 발표하고 고려연방제를 비롯하여 남북평화협정, 고려연방국으로 유엔가입 등을 제의하였다. 1977년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의하면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군인의 10만명으로 축소할 것을 제의하면서 무력증강의 중지와 다방면의 남북교류를 주장하면서 남북한간의 긴장해소를 강조하는 반면에 남북한 당국간의 접촉과 대화보다도 ‘대민족회의’소집과 같은 정치협

상회의를 주장하고 선전함으로써 남한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려고 노력하였다.

(3) 남북한 교류의 진전과정

1971년 8월 대한적십자가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고 북한 적십자가 이를 수락하여 1971년 9월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이,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이 성립됨으로써 분단후 처음으로 남북한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1971년 11월부터 남북한 실무자간의 비밀접촉과 상호왕래 등 꾸준한 정치협상이 이루어져서 남북한은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남북한간의 최초의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방면에서의 남북교류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평화통일의 원칙에 기초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정부차원의 남북조절위원회와 민간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서로 빈번히 왕래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하였으나, 남북한간의 서로 대립되는 주장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1973년 8월 북한은 방송을 통하여 남한에 대한 비방과 함께 남북대화에 대한 일방적인 중단성명을 발표하여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남한의 제의에 의하여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회담과 접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결국 남북대화는 정상화되지 않고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적십자회담은 1973년 7월 제7차 본회담과 1977년 12월 제25차 실무회담을, 남북조절위원회는 1973년 6월 제3차회담과 1975년 3월 제10차 부위원장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서울, 평양을 잇는 남북직통전화는 1972년 4월 비공개리에 개통되어 남북 협상에 이용되어 오다가 남북공동성명발표와 함께 공식화되었다. 남북직통전화는 남북회담개최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협의, 고위층의 비밀방문 실현, 남북공동성명발표에 크게 공헌하였고, 휴전선의 총격사건, 동해상에서의 어부 및 어선남북사건 등 남북한간의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에 협의통로로써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전화는 1973년 8월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으로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뒤에도 계속 운영되어 왔으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직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대화는 1979년까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후, 남북한은 모두 상이한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독자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 1979년 2월 박정희대통령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무조건 대화재개’를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에 응하여 남북간의 접촉이 재개되어 2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일관된 주장으로 성과없이 끝나버렸다.

한편,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남북체육회담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1976년 5월 방콕의 제18회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대한 축구협회의 제의로 남북한 축구교류를 위한 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은 결과통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평양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35차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참가를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의 대표회의가 1979년 2월에서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열렸으나 성과없이 끝나버렸고 남한은 경기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남한의 주도하에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성립되어 분단 후 최초로 남북한간에 대화의 장이 열렸으나, 많은 대화와 접촉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대화보다 대결에 치우침으로써 이렇다 할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70년대의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대화속에서도 상당한 긴장과 갈등을 수반한 대립·대결상태로 지속되었다.

제 3 단계 (1981년~1987년)

1980년대에 들어서 남북한이 각기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운 통일접근방법을 제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시도하였고 70년대와 다른 새로운 남북교류와 협상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 여러 분야의 회담이 열리고, 이산가족과 예술단의 교환방문과 북한의 수해물자 인도·인수에 의하여 분단후 최초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가운데 상호 대립되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남북간의 대결·대립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 이어가지는 못하였다.

(1) 남한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남한은 ‘선실질관계개선, 후통일’에 입각하여 발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동서독 통일정책을 모델로 하여 통일문제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축성있게 접근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81년 전두환대통령은 남북한 관계는 쌍방간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20개항의 구체적인 시범실천사업 및 공산권 거주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방문등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20개 시범실천사업에는 이산가족의 우편교환과 상봉실현, 설악산, 금강산지역 공동관광지개발, 각계 인사의 상호친선방문 및 자유왕래,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민족사공동연구, 상호정규방송 자유정취허용, 쌍방기자의 자유취재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외에 남북한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 경제, 문화분야의 다각적인 교류를 계속하여 제의하였다. 남북한 교역과 경제 협력,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참가를 위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체육회담 및 전반적인 체육교류, 고고학과 미술사분야에서의 자료교환, 전시회, 공동연구 등 문물교환, 우리말, 전통민속문화, 천연기념물 등 민족유산의 발취·보존 연구를 위한 협력 등을 제의하였다.

(2)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창한 후 계속 이를 극구 선전하면서 반공법철폐와 미군철수와 함께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고려민주공화국창립방안의 기본정책아래 연방제국가실현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주장하는 ‘선연방제, 후남북한교류’라는 교류정책을 주장하면서 남한의 제의를 거부하고 정치·군사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먼저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1981년 평양, 서울, 판문점중에서 ‘민족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고, 1982년 남북정치협상을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각 정당도 참여하는 남북정치인 연합회의를, 1983년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1984년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구실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수정하여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을, 1985년 남북한 불가침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회회담을, 1986년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협상을, 1987년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의를 계속하여 제안하였다.

(3) 남북한 교류의 진전과정

서로의 근본적인 시각차이로 쌍방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남북한은 상호불신과 적대감속에서 어떤 진전이 없는 냉전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83년 10월 9일 버마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

되어 극도의 위기를 맞았다. 그후, 198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남북한은 비로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의 남북한 단일팀참가를 위한 남북한 체육대표회담이 1984년 4월에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1984년 6월 북한이 대회불참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러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대화는 아무런 성과없이 또 다시 중단되었다.

1984년 9월 북한 적십자회가 수재구호 물자제공을 제의하자, 남한이 즉각 이를 수락하여 수재물자를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어 온 남북한간의 대화를 제의하였고 이에 북한도 과거와 달리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관계는 다시 대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70년대의 남북관계에서 한 걸음 더 진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이외에 경제·국회·체육 등 다양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12년간 중단되어 왔던 남북적십자회담이 1985년 5월 재개되어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교환방문을 실시할 것을 합의사항으로 결정하였고, 1985년 9월 20일 분단 40년이후 처음으로 수십명의 이산가족이 남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서로 가족과 친척을 만났고, 이에 예술공연단도 동행하여 각기 두 차례의 공연을 가졌다.

한편, 수재구호물자의 인도·인수로 인하여 남북간의 물자교류가 분단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경제회담이 판문점에서 1984년 11월에서 1985년 11월까지 5차례나 개최되어 남북한 교역품목 및 방안 그리고 경제협력방안 등을 토의하여 남북교역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물자교역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외에 북한의 제의에 의하여 ‘남북한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의 예비회담이 1985년 7월, 9월 2차례에 걸쳐 개최

되었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결국 무산되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주선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 관련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1985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로잔느에서 4차례나 이루어졌으나 서울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주최에 관한 남북한간의 의견대립으로 구체적인 성과없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는 1986년 1월 남한의 한미합동군사계획인 틱스피리트훈련이 있자 북한은 이를 비난하고 진행중이던 모든 남북대화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일체의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그 후 북한의 금강산 댐공사, 북한의 정치·군사회담제의 그리고 잇따른 밀입북사건, 북한요원에 의한 KAL기 대폭발사건등으로 인하여 남북한 관계는 대화의 명백한 유지한 채 다시 적대적인 대치상태로 전개되었다.

제 4 단계 (1988년~현재)

최근 독일의 통일, 소련연방의 해체, 동구공산주의 국가의 붕괴, 개혁추세 등의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붕괴와 탈이데올로기적 변혁으로 세계적인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과 정치적 민주화와 자유화로 인하여 국내분위기가 성숙되어 정부를 비롯하여 전국민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북한 관계도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하여 오던 대립·대결의 관계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접어들어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각종 교류와 접촉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는 아직도 냉전구조적 체제경쟁을 벗어나지 못하여 남북 대화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고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 남한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남한은 기존의 통일정책이 지금까지 남북한 긴장 완화 및 관계개선을 위하여 가시적으로 성사한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면서 새로운 남북한 관

계를 정립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전개하여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후 거의 모든 동구공산권의 국가와 그리고 최근에는 소련, 중국, 베트남과 수교하였다. 또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을 통하여 북한을 우리의 적이나 경쟁상대가 아닌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남북한 교역의 문호개방,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남북한 상호교류와 상호왕래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협조 등을 추진하여 남북한 관계의 개선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민족공동체를 실현할 것을 밝혔다. 이 민족공동체선언에 이어 1988년 9월 민족공동체 시각에서의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정부는 7·7특별선언의 기본 정신을 과감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89년 3월 통일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9년 6월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12월 ‘남북협력기금법’ 등과 같이 남북한 관계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남북한간의 왕래와 교류의 물꼬를 트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북비난방송의 전면중단, 북한 및 공산권자료의 대폭 공개, 대북한 경제개방조치 등을 발표하였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교육당국회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제의하였다. 특히, 1990년 7월 20일 ‘민족대교류’기간을 선포하고 8월 13~16일간 남북의 자유왕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

88서울올림픽대회와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남한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자 북한은 이에 맞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1988년 12월부터 북경에서 미국과의 비공식회담을, 1991년 1월부터 일본과 국교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회담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가졌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대화에 응하기 시작하였다.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IPU총회참가를 위한 남북한 단일대표단구성을 제의하였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회담에 호응하였다. 또한, 남북통일음악회,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상호교환 개최하였고, 남한과 직·간접적인 물자교역을 시도하였으며, 해외동포의 북한방문 및 제3국에서의 남한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등 전례없는 개방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1988년 ‘남북한 국회연석회의’ 및 남북한 고위급정치·군사회담, ‘평화보장 4원칙’, 1990년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면서 정치·군사문제의 선결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통일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남한내의 활발한 통일논의에 편승하여, 88서울올림픽대회의 남북한 공동개최, ‘범민족대회’소집, 민족통일 협상회의소집, 평양축전참가 등을 제의하면서 정부보다도 대학생, 재야 인사 및 단체 등 진보세력과의 대화와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구권 공산주의국가의 변혁과 한·소, 한·중 수교 등에 따른 주변 상황변화와 내부의 경제적 위기는 북한에게 국제적인 고립과 함께 개혁 및 개방압력에 의한 체제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북한은 무엇보다도 체제유지와 안정화에 주력하여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남북한 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무척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남북한 교류의 진전과정

남북한간에 대화를 비롯하여 교류와 협력이 전례없이 비교적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시도되고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989년 2월부터 1990년 7월까지 8차례의 남북 고위급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후에 1990년 9월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비로서 개최되었다. 남북한 총리는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가면서 방문회담을 갖고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를 의논하였으며, 노태우대통령, 김일성주석을 각각 접견하였다.

그 후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한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와 접촉의 통로로서 8차례(1992년 9월까지)나 계속 진행되어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풀고 남북화해와 협력시대를 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고, 12월 13일 '남북한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여 발표하고 합의된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시켰다.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이외에 국회회담,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이 잇달아 재개되었다. 특히, 남북체육회담은 국제대회 남북한 단일팀참가와 남북한 체육교류를 위하여 1989년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13차례나 진행되었으며 남북한 통일축구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오가며 열었고, 제1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 최초의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각종 접촉과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통일축구대회, 뉴욕영화제의 남북영화예술인참가, 범민족 통일음악회와 '90송년전통음악회, 일본 국제예술제에서의 남북한 합동연주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평가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그리고 제2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학술대회의 동시참가 등을 통하여 남북왕래와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북한산품의 남한으로 공개수입(1988년 11월 3일, 제3국경유) 및 대남직수송(1989년),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방북(1989년 2월), 남북한 상사간의 직접교역계약(1991년 4월)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의 직접교역 및 공동개발형식의 대북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제일교포 이대경목사(1989. 7. 27~8. 12)가 정부의 허가하에 종교적 목적으로 북한을 최초로 방문한 후 남북한주민간의 서신왕래를 비롯하여 남북한 왕래와 접촉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남한 주민의 북한방문은 89년 1건(1명), 90년 13건(183명), 91년 10건(237명), 1992년에는 8건(367명)으로 증가되었고, 북한주민의 방문은 1990년 4건(291명), 91년 3건(175명), 1992년 3건(10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은 90년 54건(368명), 91년 244건(1,148명), 92년 179건(86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고 추진되어 온 남북한 교류사업을 총괄하여 정리하여 보면, 남북한 교류는 주로 정부 주도하에 통제되었고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단발적인 행사에 그친 것이 대부분으로서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남북대화가 다시 중단되고 남북한 관계가 경직되어 감으로써 더 이상의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래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체육,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한 관계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발전과정

분단이후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으나, 19991년 6월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참가를 위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평가전을 갖고 대회에 참가한 사례외에는 아직까지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주로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제의되어 왔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1961년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발기대회에서 남북 학생회담및 남북 학생교류가 제의된 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988년 학생운동을 주도한 민족통일혁명세력에 의하여 6·10및 8·15 남북한 학생회담과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이 다시 제기된 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인 오늘날까지 제의되어 온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1988년을 기점으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발전과정을 1960년에서 1987년, 그리고 1988년에서 현재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1960년~1987년)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4·19혁명이후 대학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학생 민족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처음으로 정치사회적 논쟁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1960년 9월 초순, 고려대학생들은 ‘남북통일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열고 미군 철수 및 통일 문제협의를 위하여 남북한 대표로 구성된 ‘전국 통일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경제적 자립에 기초한 자주통일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한 통일성취를 주장하였다.

학생들속에서 민족 자주의식과 통일기운이 매우 높아지고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통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단체들이 형성되어 대중집회, 시위,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11월 18일 서울대에서 민족통일을 주장

하는 ‘민족 통일연맹’이 결성되어 대정부및 사회건의문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남북한 서신교류를 요구하였다.

이를 시발로 하여 1961년 2월 16일 성균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 대학과 경북고와 경북여고 등 일부 고교에서 ‘민족 통일연맹’ 또는 ‘민족 통일연구회’ 등 자주적 민족 통일운동을 위한 단체들이 발족되었다. 4월 19일 서울대를 비롯하여 각 대학에서는 4·19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화교류, 서신왕래, 경제교류및 학생회담을 포함하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를 위한 투쟁을 호소하였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족 통일연맹은 대의원 총회를 열고 남북 문화교류의 전제로서 남북한 학생의 힘을 뭉치자고 제의하고 남북한 학생회담, 남북한 학생기자 교류, 남북한 학생 학술 토론회 및 예술, 학문, 창작교류, 남북한 학생 친선 체육대회 등 4개항에 걸친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북한 학생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5월 5일 전국 19개 대학과 1개 고교가 이에 호응하여 ‘민족 통일 전국 학생연맹’을 발족시키고 서울대 민통련의 5·3 남북한 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족 자주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정치협상, 남북한간의 서신, 문화, 인사교류, 남북체육대회 개최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하여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에서 시작된 남북한 학생회담 및 민족 자주 통일촉진을 위한 투쟁은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로 번져 각종 켈기대회와 대중시위로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 장면총리는 남북한 학생회담의 승인 불허방침을 천명하고 전국 학생연맹이 주장한 남북한 학생회담에 대한 강력한 저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부정적인 방침속에서도 5월 13일 남북한 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 촉진 켈기대회가 거행되었으나, 민족 통일운동은 시도되기 전에 5·16 혁명에 의하여 끝나버렸다.

5·16 혁명 이후 1980년 후반까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만이 허용되고

민간 차원에서 일체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이 엄격히 금지되는 동안에 통일문제 논의와 함께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채 긴 잠복기를 가졌다. 물론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긴장 완화로 남북 대화가 간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다른 분야의 교류와 함께 제외되기도 하였다.

1976년 5월 6일, 방콕에서 제18회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시 대한 축구협회 김종하회장이 북한 축구팀 김종형단장에게 남북한 축구교류를 제의함으로써 열렸던 방콕 라자호텔 회담에서 남한은 북한에게 국가 대표팀은 물론 청소년대표, 실업대표, 대학및 고교 대표팀간의 축구교류를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은 후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북한 교류는 무산되었다.

제 2 단계 (1988년~현재)

제6공화국에 들어 서면서 국제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정책 및 개방적인 대북 정책과 정치적 민주화와 자유화로 국내 분위기가 성숙되어 정부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생들도 분단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과거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에서 급진적인 반체제 이념투쟁, 반미투쟁, 통일혁명을 주장하는 민족 자주를 위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도 학생들의 통일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여, 1988년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온 전대협산하의 학생들에 의하여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과 6·10 및 8·15 남북한 학생회담이 제기된 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3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장선거에서 김종기후보가 발표한 북한측 김일성대학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민족 화해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의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8월 1일~8월 14일)과 민족 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9월 15일~17일)를 추진하기 위한 6·10 남북한 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1988년 4월 2일 북한은 이

를 적극 수용하면서 답신을 보낼 것을 발표하였으나 정부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신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한 학생교류운동은 4월 16일 연세대에서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준비위원회의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김일성대학 학생위원회에게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책과 남북한 청년학생간의 상호 교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청년학생대표간의 실무회담개최를 제안하는 제2차 대북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1988년 5월 14일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고려대에서 전국 6개 지역 12여 대학 학생대표를 비롯하여 2만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6·10 남북 체육회담 성사 및 공동올림픽쟁취를 위한 범시민, 학생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6월 10일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참여학생의 확대와 올림픽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한 학생회담을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하는 제3차 대북한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그후 전대협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남북한 학생회담성사를 위한 지지집회가 계속 열렸고 남북한 학생회담 강행을 투쟁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성사가 되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담긴 6·10 남북한 학생회담은 전 국민에 통일문제의 절박성을 인식시켜 통일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하여 5·16 혁명이후 지금까지 금기되어 왔던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의 물꼬를 텃으며, 민족 민주 운동권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들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8년 6월 11일 전대협은 8·15 남북한 학생회담과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 토론회및 대동제, 체육대회 등을 제의하는 제4차 대북한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된 준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88년 6월 18일 전대협은 고려대에서 기독교, 불교 등 사회 운동단체와 정당(평민당)을 초청한 가운데 ‘조국통일을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8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획된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을 예정대로 진행시킬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전대협은 8·15 학생회담의 실행을 위하여 투쟁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다시 무산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남북한 학생교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1988년 7월 15일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남북한 교육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이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 학생간의 조국 순례 대행진과 친선 체육 교환경기를 비롯하여 음악, 미술, 무용, 연주 등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공연및 전시회의 교환개최, 명승지와 민족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교환 등 그밖에 학생교류추진에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학생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주장을 들어 거부하였다. 1988년 1월 31일 남북한 대학생 교류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차원의 협의기구인 ‘남북 대학생교류 추진위원회(위원장 정 용석, 단국대 교수)’를 발족하였고, 3월 13일 남북한 대학생교류를 위한 남북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1988년 12월 16일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의 김창용위원장은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을 초청하였고, 12월 23일 전대협은 이에 공식참가를 밝히고 북한에게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전대협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인 교류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평양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북한과 직접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1989년 6월 3일 전대협은 ‘제13차 평축참가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정부추진의 ‘남북한 대학생교류 추진위원회’의 평축 참가추진을 거부하였다.

정부의 평양 축전 참가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1989년 7월 임수경이 남한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축전에 정부의 허가없이 비밀리 입북하여 참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대협은 한양대에서 평축참가를 위한 ‘판문점통과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평축이 진행되고 있는 평양에서 전대협의장 위임에 의하여 임수경과 조선 학생위원회 김창룡의 명의로 남북 청년학생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990년에 들어 오면서 남북한 학생교류운동은 범민련을 중심으로 통일과 교류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5월 15일 전대협은 연세대에서 ‘자유왕래, 전면 개방실현과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민족 모두가 자주적으로 왕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전면개방과 자유왕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1990년 7·20선언에 의하여 한때 성사가능성이 있어 보이던 ‘범민족 대회’가 남북한간의 서로 대립되는 주장에 의하여 무산되고 각각 따로 열렸다. 북한은 우리측의 선별 방북 허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접 접촉을 이유로 판문점 북쪽 지역에서 반쪽 대회를 강행하였고, 정부도 끝까지 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남측 대표단의 방북을 원천 봉쇄하였다. 이에 1990년 8월 13일 연세대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대회’ 개막식을 갖고 5일간 남쪽의 범민족 대회를 진행하였다. 전면개방과 자유왕래, 남북한 군축과 평화협정체결, 평화 통일방안, 범민족 대회의 의의와 방향 등 4가지 주제에 대하여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통일기원굿, 민요부르기, 슬라이드 상영 등 갖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한, 1991년 6월 전대협은 7월 베를린에 열릴 ‘남북 청년학생 해외 통일대축전’ 참가 투쟁을 벌여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박성희와 성용승 남녀 두 학생을 출국시켜 참가시켰다.

전대협은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 띄우기투쟁’을 벌여, 1992년 5월 8일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 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산하 제3기 ‘조국 통일 학생위원회’의 출범식도중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단상에서 흔들 후 부산, 서울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또한, 전대협은 1992년 5월 30일 제 6기 출범식을 갖고 이른바 ‘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 정치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연방제통일실현, 주한 미군 철수투쟁 등을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조선 학생위원회위원장과 조국 평화 통일 사업담당 부원장의 축하연설을 녹음으로 소개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념적, 정치적 색채가 두드러진 남북한 학생교류운동이 학생 통일혁명세력에 의하여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1989년 임수경의 방북과 조선 학생위원장과의 ‘남북 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운동권밖의 일

반 학생들도 통일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학술및 체육, 문화 교류중심의 탈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남북한 학생교류가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각 대학 각과 및 단체별로 ‘남북한 대학생교류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0년 4월 전대협도 정부의 대북창구 일원화방침을 일부 수용하고 ‘1천개 학과 10만명 방북 추진운동’을 반미 통일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대학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였다. 또한, 1990년 5월 비운동권 단체인 한민족 대학생 연합은 청주대에서 제1기 출범식을 갖고 ‘1천만 이산 가족 상호 왕래및 남북 학생교류’를 제의하였다.

1989년 9월 경희대 사학과 학생들이 고구려 문화권 유물·유적 답사를 위한 방북신청을 한 이후 남북한 대학생 교류신청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부록 II-3-2 참조). 유물·유적 및 학술답사, 학술회의, 조국 순례 대행진, 종교행사, 북한 취재방문, 대학 축제 및 체육경기와 자매결연 등 각종 학생행사 등 다양한 교류활동과 이를 위한 북한방문, 북한 학생초청, 남북한 교환 방문 신청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1992년 11월 31일)까지 신청된 총 21건의 남북한 학생교류 신청사례 중에 14건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활동내용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6건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1건은 정부승인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1991년 7월 서울 대학생 기자연합의 북한 실상취재를 위한 방북신청과 1991년 9월 건국대 국어국문학과와 학술답사 방북신청은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정부의 주선으로 판문점에서 북한과 북한방문을 위한 예비실무접촉을 각각 한·두차례씩 가졌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1년 전대협이 북한의 조선 학생위원회에게 통일투쟁의 연속으로 편지 교환투쟁을 제의한 이후 범민련 해외본부를 매개로 하여 편지및 Fax를 통한 남북한 접촉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전대협의 지침에 따라 Fax 편지교류는

건국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연세대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부록 II-3-3 참조). Fax 편지교류의 내용은 주로 북한 학생의 일반적인 가치관,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술교류, 북한의 교육제도 및 의학체계, 북한의 농촌 및 북한 대학생의 농촌 활동상황, 북한의 전통 민속놀이 등 학생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과 학술자료의 소개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하여 Fax 편지교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수신단체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담신함으로써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은 교육제도, 학생들의 생활, 유물·유적을 비롯하여 민속놀이 등 비정치적인 자료와 정보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의 비방, 핵전쟁 위협제거 및 분열주의 타도, 국가 보안법 철폐, 연방제 선전,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 등의 정치적 선동이 담긴 내용을 담신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유관단체들도 남북한 청소년교류운동에 참여하여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은 전체 사회운동의 한 중요한 영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한국 해양소년단연맹이 북한의 조선 사회주의 노동청년위원장에게 남북한 청소년 공동수로탐사 및 제11회 전국 해양제전 및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해양축제에 참가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청년 회의소의 평양 소년축구단 교환경기 개최제의, 한국 우주소년단의 '93 대전 엑스포 세계 우주단 대회 참가초청, 대한 스키 협회의 제2차 아시아 주니어 알파인 스키 대회 참가초청과 1992년 한국 야생 동물 보호협회의 남북 어린이 환경 보호 글짓기 대회개최, 대한 호국 청소년 육성회의 한민족 역사 유적지탐방과 공동 행사 참가 등 남북한 청소년교류제의, 코오롱상사의 학생 구간마라톤 대회 참가요청등 다양한 남북한 청소년교류사업이 각 사회단체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부록 II-3-1 참조). 그러나, 이 역시 성사된 것은 아직 없다.

4.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한계성과 전망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 관계의 진전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조국 순례 대행진, 친선 체육경기 개최, 음악, 미술, 무용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공연및 전시회교환, 명승지, 민족 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교환, 그리고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및 평양 국제 청년학생 축제참가와 서울 국제 청소년 잼보리 등 국제 청소년행사에 단일팀 또는 공동참여와 같은 청소년교류에 관한 여러 방안을 상호제안을 하고 접촉과 대화를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1991년 리스본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를 계기로 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안제시에 그쳐 버렸다.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이처럼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 먼저, 청소년분야의 교류는 정치, 군사, 경제 등 다른 분야와 같이 당장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써 쉽게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에 의하여 야기된 남북한의 대립과 대결구조에 있어서 청소년교류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은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가의 장래와 귀결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는 체제유지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남북한은 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다. 서로 상반되는 체제와 이념속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한 남북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는 청소년에게 상당한 충격과 변화를 주어진 체제수준에서 상당한 위협적 영향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남북한은 자신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접촉이나 교류를 대내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가급적으로 제한하거나 가능한 회피하려고 노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남북한이 제외하여 온 남북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는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면서,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제안들로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주체인 정부와 학생, 북한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분단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전개하여 온 통일 및 교류정책으로 인하여 남한은 ‘선신뢰 회복 후평화 체제구축’ 주장아래에서 정치·군사 문제 해결이전에 남북한 교류실시를, 북한은 ‘선평화 체제구축, 후신뢰 회복’ 주장아래에서 남북 교류실시이전에 정치·군사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교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내세워 조금도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 교류를 비롯한 남북한 교류는 이렇다 할 성과없이 대부분 무산되고 말았다.

최근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와 학생간의 대립되는 의식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서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둘러 싸고 의견대립과 물리적인 충돌만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 창구 일원화를 내세워 학생들의 독자적인 교류를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은 자주적인 민간 교류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교류 및 북한 방문을 시도하면서 학생들의 행사 강행투쟁과 경찰의 물리적인 저지가 계속되어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가 시도도 되기전에 결별되어 버렸다. 이에 북한은 남한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추진되거나 정부가 승인한 교류를 거부하고 민간 교류를 선호하면서 학생및 재야 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직접 접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도 불구하고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는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교류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때,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아직 서로 상반된 이념으로 대결하여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냉전구조속에서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가 무척 어렵다. 앞으로 북한의 체제변화가 일어나거나 남한이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취하던지 현남북한 관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교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최근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에서 일어난 청소년들이 선봉이 된 민중봉기를 목격한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내부적인 모순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단의 벽을 더욱 높이 쌓아 대외적으로 단절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남북한 합의서〉의 교류·협력분야의 예시에서 청소년부문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 볼 때 청소년교류의 전망은 그다지 밝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청소년교류가 필요하다는 청소년교류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만일 남북 관계가 원활히 발전된다면 정치적 협상과 상호협조에 의하여 청소년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남북 관계의 걸림돌은 남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아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남북 대화가 활성화되고 남북 교류가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어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일시에 다방면에 걸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Ⅳ.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방안

1.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 모색의 필요성

구체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적대감과 이질화현상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남북한 청소년들이 상호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의 화합과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교류관 상대방이 반응을 하여 합의하고 지원할 때 비로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전망은 북한의 입장과 태도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하여 청소년교류를 제안하거나 수용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현 남북한의 갈등구조에 있어서 매우 어렵지만, 북한이 지니고 있는 확고한 입장을 바꾸어 교류로 유도한다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다각적인 방안을 북한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설득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이 언제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주제를 내세워 청소년교류를 제의할 지 모른다. 이와 같이 언젠가 불연듯이 찾아올 교류의 기회를 교류의 어려움과 비현실성을 들어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확고한 대안이 없이 북한측의 제안을 주관없이 무조건 수용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먼 훗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단상황속에서의 남북한 청소년

년교류는 이념적인 논쟁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무척 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된다. 이에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까다로운 영역에 속하며 접근이 매우 어려운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뚜렷한 목표와 이에 접근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목표와 기본방향

상황변화에 따라 큰 변함이 없는 일관된 정책은 각 단계에 있어서 목표와 과정이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류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활발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의 뚜렷한 목표와 이에 접근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을 모색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목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한 민족간의 만남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되느냐 아니면 북한 사회의 개방이나 변화 또는 통일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위하여 추진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물론, 남북한의 교류가 북한 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민족간의 만남이라는 순수한 목적외에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이 개재될 경우에는 최근 독일 및 동구권국가와의 사태로 긴장하고 있는

북한의 경계심만 자극하여 실현가능한 작은 기회마저 차단되기 쉽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통일승계세대의 육성차원에서 오랜 분단으로 야기된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성과 불신감 및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발전시켜 단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류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외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주체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청소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동의 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와 함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교류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청소년들을 남북한 청소년교류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통제된 교류보다 민간차원에서의 자율적인 교류가 더 유용하고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이 정부주관의 교류를 기피하고 청소년단체와의 교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단체의 자주적인 교류를 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

물론, 청소년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규정되고 보장 또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청소년교류는 교류활동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거나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교류는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교류를 허용하여 가능한 많은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를 허용하고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통하여 남북

한 청소년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을 통하여 교류의 내용이나 방법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주도적으로 원칙을 수립하여 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로 청소년단체들에게 실행상의 제반문제를 이관하여 민간단체들이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정부는 교류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조정자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3)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한 태도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전망이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여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끌어 들여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에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임이 없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보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의 명분과 실리를 보다 살려주는 방향에서 과감한 양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꽃파는 처녀’의 공연에 대한 북한의 제의가 비록 정치선전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교류대상으로 선호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대북교류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공연이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북한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기간동안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에게 북한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어 올바른 북한관을 심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질 때 북한 청소년들에게 개방화,

자유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에서 북한이 필요성이나 자신감에 의하여 제의하고 있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또 북한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쉽게 응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현실성이 있는 교류활동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의하여 우리가 먼저 교류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방향

남북한 관계의 현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상대방의 사상, 이념, 체제등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단일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한 우호적인 접근으로서 정치성이 배제된 교류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는 교류는 역기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비정치적인 순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교류를 원초적으로 배제하여야 하고, 교류활동과정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불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념이나 체제를 자극할 수 있는 토론이나 논쟁은 가급적 피하고 국기, 국가, 국호표시 등 정치적 상징물은 수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비교우위의 논리에 입각한 수직적인 교류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우호적이고 수평적인 교류이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차이, 특히 경제적인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교류활동은 북한으로 하여금 일체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대화를 회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어 역기능적인 민감성을 자극시킬

소지가 많다.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에 대한 열등감 및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우월성과 함께 무시하려는 거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어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이질감과 거리감만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남북한의 우열이 입증되는 분야는 가급적으로 배제하고 서로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정적인 접촉을 충분히 가진 후에 교류를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세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유발이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돋굴 수 있는 분야부터 가려내어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입시에 얽매어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과 관심을 고려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감정이나 우리 체제에 대한 반응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이질감이나 체제의구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결국,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무엇보다도 대립이나 갈등이 아닌 상호이해와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적 화해와 화합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택하여 시도하여야 한다. 즉, 이념이나 체제보다 민족이 앞서는 분야로서 이질적이고 상대적인 요소보다 동질적이거나 전통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류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는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그네, 널뛰기, 윷놀이, 농악, 탈춤 등의 민속경기나 놀이중심의 행사, 민족사적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과 유물견학, 전통문화·예술활동 등과 같이 민속중심 또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활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활동과 같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나 행동과 관련된 교류활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분야의 대표단 초청 공연이나 시범경기(북한의 체조나 교예), 국제 경기에 단일팀참가, 공동의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림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을 들 수 있다.

(5)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방법

남북한간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 각자의 국내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성사되기까지에는 극복하여야 할 난관이 너무나 많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진전은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많은 대화와 접촉, 협상 등 남북한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비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하나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기적인 계획아래에서 상당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서신교환이나 미술, 글짓기 대회, 상호교환전시회 등 비접촉적인 물적 교류에서 남북한간의 상호방문이나 왕래가 중심이 되는 인적 교류로, 나아가 공동조사, 공동연구, 공동행사 등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함께 수반되는 교류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교류활동은 독자적인 사업을 먼저 추진한 후에 그 다음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사업 및 협력으로 연계시키고, 단체교류형식에서 점차 개별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실천용이하고 쌍방이 합의하기 쉬운 시범적인 차원에서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전반적인 교류로 확대되어 가야 한다. 특히 인적 교류의 경우에는 초청공연이나 주요행사예의 대표단초청과 같은 친선방문차원에서의 상호왕래와 접촉에서 수학여행이나, 고적답사, 시찰 등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로 한정하는 제한된 교류로, 나아가 국내외 청소년행사에 공동참여 및 공동조직, 자매결연을 통한 공동활동과 자유왕래로 확대되어야 한다.

네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함께 제3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교류의 방법을 동시에 병행하여 서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축적하여 나가는 것이 좋다. 이 방법도 제3국에서의 국제행사나 회의의 공동 참가에서 쌍방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행사에 상호 초청 참가로, 제3국의 국제행사나 회의에 단일자격의 참가로, 나아가 국제행사 및 회의의 공동개최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방안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인 단계를 통하여 차근 차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예측되는 남북관계의 발전상황을 비추어 볼 때,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청소년교류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는 기반조성단계, 청소년교류에 대한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청소년교류가 실시되는 교류추진단계, 그리고 청소년교류가 확대되고 공동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교류·협력활성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는 이러한 일정한 단계적 추진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단계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교류방안이 동시에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화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진전되는 남북관계에 맞추어서 각 단계별 진전속도를 조절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기반조성단계

초기의 접촉단계로서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여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고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위한 접근시도는 우선 쌍방의 관계인사들간의 접촉과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북한에게 청소년

교류를 다각적으로 제의하고 설득하여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관계인사들간의 비밀접촉이나 비밀방문 등 비공식적 접촉을 선행시켜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에 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한 의사가 서로 교환되고 접촉이 성립되어 교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계인사들간의 회담을 통하여 교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남북한 청소년교류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두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우회적인 간접적인 접촉방법을 이용한 교류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들의 인적 교류의 부담이 없는 비접촉적인 물적 교류를 실시하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여 이질감과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신 교류, 미술 및 글짓기대회, 영화의 교환공연이나 사진, 그림, 공예품 및 유물이나 민속자료 등의 교환전시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세계 청소년회의(WAY), 아시아 청소년회의, 아시아 청소년 단체 평의회(AYC) 등과 같은 국제청소년기구에 가입하거나 세계 올림픽 청소년캠프, 세계잼보리 등과 같은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협조하며, 제3국에서의 국제청소년회의와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접촉기회를 확대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보와 자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제 2 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단계

제 1 단계에서 체결된 남북한 청소년교류협정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를 주도할 공식기구가 설치되어 남북한 청소년교류활동사업을 검토하고 교류활동사업의 실행과 실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실시할 때 실제로 필요한 교류의 원칙, 대상,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협정도 체결하게 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협정에 따른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는 관계인사들의 상호교환방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계인사의 방문은 특정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단으로부터 개별인사의 친선방문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교류는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적대감과 이질성을 해소하고 이해와 우의증진을 목표로 하여 서로간의 수준차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류를 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남북관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천이 용이하고 합의하기 쉬운 시범적인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를 각 분야별로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일반적으로 친선방문형식의 동시왕래나 교환방문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예술단의 상호교환공연, 체육분야의 시범경기, 일정한 지역만을 개방하여 방문하게 되는 견학, 고적답사나 수학여행,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특정한 기념일이나 행사에 대표단을 참관초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 연구소등 청소년 관계기관간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자료와 정보교환과 이를 목적으로 한 상호교환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좋다. 또한, 청소년연구를 위한 학술대회를 상호교환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쌍방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국제청소년행사에 상호 초청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 3 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단계

최종단계로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어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청소년관련분야의 전반에 걸친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공동활동과 자유왕래가 중심이 되는 직접적인 교류가 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체

제가 구축되어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조성된다. 이 단계에서의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이미 활성화되고 제도화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질성을 추구하므로써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들은 공동의 협력사업을 위한 청소년 분야의 자료 및 정보교환과 이를 위한 인적 교류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한다. 이로써 공동관심 영역이 확대되어 공동의 청소년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 워크샾, 심포지움 등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공동의 조사나 연구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관련전문가들은 단기 또는 장기간 체류하여 충분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상호연구방문이 허용될 수도 있다.

둘째, 쌍방에 개최되는 각종 회의나 행사(예를 들면, 세계 한민족 체전 청소년 한마당)에 서로 초청하여 공동참여하고, 나아가 국제청소년기구에 단일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국제행사나 대회에 단일팀으로 참여하여 공동협력하기도 한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내외의 각종 청소년관련행사 및 대회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세째, 학교, 청소년단체, 연구기관 등의 청소년관련기관의 자매결연을 촉진하고, 예·체능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공동참여기회를 마련하거나 방학중 각종 특별활동을 위한 공동조직을 형성하여 인적 교류 및 공동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네째, 비무장지역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토론, 친목, 수련, 예술문화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가진 청소년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도 있다.

〈표 IV-1〉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단계

단 계	목 표	교 류 활 동 사 업
제1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접근 및 기반조성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 인식, 실현가능성 확인 - 남북한간의 이해와 신뢰분위기 조성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기반구축 - 남북관계인사간의 대화, 접촉 그리고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 협정 체결 ○ 남북한 청소년간의 직접적인 접촉보다 위회적이고 간접적인 접촉방법이 효과적 - 인적교류의 부담이 없는 비접촉적인 물적 교류실시 : 서신교류, 미술 및 골짓기 대회, 영화의 교환공연, 사진, 그림, 공예품, 유물이나 민속자료의 교환전시회 - 제3국에서 국제청소년회의 및 행사에 공동참여
제2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단계 - 남북한 청소년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증진	○ 청소년 관계 인사의 상호 교환방문 - 대표단에서 개별인사의 친선방문으로 확대 ○ 시범적인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제한된 교류 실시 - 친선방문형식의 동시왕래나 교환방문, 예술단의 상호교환공연, 체육분야의 시범경기 견학, 고적답사 및 수학여행,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특정한 기념일이나 행사에 대표단 참관 초청 - 청소년관련 기관간의 자료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상호교환방문, 청소년연구를 위한 학술대회 상호교환 개최 - 쌍방개최의 국제회의나 국제청소년행사에 상호 초청하여 공동참여
제3단계	○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활성화단계 - 민족의식 고양과 남북한 협력증진	○ 청소년관련분야의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사업 : 공동활동과 자유왕래중심의 직접적인 교류 실시 -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등 학술대회 공동개최, 공동조사 및 공동연구사업, 청소년관련 연구자의 상호연구방문 - 쌍방개최의 각종 회의나 행사에 상호초청하여 공동참여, 국제청소년기구에 단일회원으로 가입, 국제행사나 대회에 단일팀 참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내외 각종 행사 및 대회개최 - 학교, 청소년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자매결연, 각종 특별활동을 위한 공동조직 형성, 예·체능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공동참여 기회 마련 - 청소년센터 공동설치 및 운영

V.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다른 어느 분야의 교류보다도 이념적이면서도 큰 사회적 여파를 가져올 잠재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이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또 성급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 부작용이 크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신중하고 확실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가 힘들다. 결국,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와 대책을 내부적으로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국민의식은 교류를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자 원동력으로서 교류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고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교류의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도 교류를 실현시켜 나갈 국민들이 교류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특히 교류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큰 관심을 갖고 교류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회풍토와 분위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이래로 무조건 강조되어 온 이념교육에 따른 강력한 반공의식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국민의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냉전구조속에서 북한을 대립하고 경쟁해야 하는 '적' 또는 '원수'로서 인식하여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서 불신과 적대감만이 조장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체계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이룰배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때에는 교류에 대한 관

심과 참여를 위축시키거나 거부시킬 뿐만 아니라 교류의 목적과 방향을 저해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인식체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대립과 경쟁 관계에서의 적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일원인 동반자로서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적 이념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북한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편협화된 반공의식을 무분별하게 강조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2.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대책

한 민족이면서도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더욱이 적대 대립관계에 있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족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지협적인 문제나 단기적인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양보를 하면서도 교류하겠다는 기본적 자세가 없으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에 의하여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를 저해하여 온 여러 법적·제도적인 규제조치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이나 이를 근거로 하여 세워진 북한접촉의 허가제도와 같은 정치적 규제를

합목적적으로 신축성있게 완화하여 남북한 교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 북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류활동사업 자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에도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 남북한의 상황과 교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우리가 주도하는 일방적 지원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실제 동서독의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서독 정부는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청소년들에게 1인당 20DM씩 보조금을 지불하였고 열차특급료면제 및 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또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 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여행보조금(기차요금의 전액무료, 전세버스대절료 85% 부담, 1인당 1일 체제비 5DM)을 지급하였다.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다른 교류사업에 비하여 뒷전에 밀려나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한 재정적인 여건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민족의 장래를 결정할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보다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교류란 어느 일방의 생각, 유도, 노력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서로 합의하고 지원하여야만 실제적으로 성립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청소년

관련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다양한 교류활동사업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두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분야의 교류활동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
법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업무는 청소년집단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과
그 복합적인 성격에 따라 전담부서인 체육청소년부이외에 각 부처별로 고유
업무기능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
다. 이에 따라서, 많은 청소년관련부처와 유관 단체들은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저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선두자리를 노림
으로써 많은 청소년교류 활동사업을 무분별하게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각 관련부처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발적
이고 단편적인 청소년교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첫
째, 비록 적용대상과 기능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실제업무에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진체제는 업무추진상 자원 및 인력의 낭비는
물론 많은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회적인 교류에 지나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교류의 추진을 주저하는 북한을
자극시켜서 청소년교류 그 자체의 가능성마저 더욱 희박하게 만들 우려가 있
다. 세째, 남북간의 반목과 불신만을 증폭시키거나 북한에게 이용당할 역기능
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부처 및 유관 단체들의 다양한 남북한 청소년교류
활동사업을 조정하고 총괄하여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전개하여 나갈 수 있
는 기능적인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전담부서와 관련부처 및 유관 단체간의 협력체제로
서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남북한 청
소년교류·협력위원회는 각 관련부처 및 단체들의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청
소년교류의 방향, 대상, 방법,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협의하여 각
단체별, 각 분야별로 추진이 가능한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여러 지원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는 해당부처의 공무원, 교사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관계인사, 그리고 청소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의 청소년교류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의 교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 및 실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담기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치교육 실시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은 현실보다도 사상·이념적인 지식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청소년교류로 인하여 북한의 이상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견고한 국민의식을 확립하여 나간다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념적 우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교육은 그동안 강조되어 온 통일교육이나 이념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에 일차적인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우선적으로 배양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체제의 필요성과 우월성을 강조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족의 역사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단일민족으로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게 한다.

민족교육은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북한의 과거와 현실,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충분히 주어

북한을 냉전의 논리에 따른 맹목적인 비판적인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이질성 및 차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호체제와 제반환경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써, 대립·적대관계가 아닌 상호이해와 화합의 관계에서 북한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인정하여 대등한 자세로 대하고, 나아가 상호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을 극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남북한 청소년 비교연구의 활성화

교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쌍방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의 바탕위에서 시작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류의 성과는 어느 정도 쌍방의 현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교류의 주체인 남북한 청소년이 갖고 있는 특성과 배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접촉이나 교류없이 서로 대립되는 이념체제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질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의식구조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실태와 제반실정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상대방인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선행하고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연구를 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현황 뿐만 아니라 그들간에 동질성과 이질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상호결합 가능성을 논하고 교류시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보다 현실성이 있는 교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비교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진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개발을 비롯하여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 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 청소년들을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방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 비교연구는 남북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될 뿐아니라 통일후에 예상되는 청소년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대비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의 비교연구, 특히 체계적인 연구가 대단히 미흡한 북한 청소년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개발원(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 국토통일원(1972), 남북교류문제 연구논문집.
- 국토통일원(1974), 남북한 사회단체교류에 관한 대비책.
- 국토통일원(1974), 동서독 교류사례와 남북한의 적용가능성.
- 국토통일원(1976), 남북접촉을 위한 이론의 정립.
- 국토통일원(1977), 남북한이 공동참가하는 각종 국제회담 및 행사를 이용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국토통일원(1978), 동서독 각종교류와 관련된 제문제 및 해결실태.
- 국토통일원(1978), 남북교류협력 유도방안.
- 국토통일원(1984), 동서독관계를 모델로 한 남북한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대책.
- 국토통일원(1984),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 제의에 대한 사례별 대응 실천방안 연구.
- 국토통일원(1985), 남북한 사회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방안.
- 국토통일원(1985), 동서독의 통일정책.
- 국토통일원(1986),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이루어지나.
- 국토통일원(1986), 분단국통합사례연구.
- 국토통일원(1988), 남북 인적교류 추진방안.
- 국토통일원(1988), 남북대화 백서.
- 국토통일원(1989), 10년간의 독일정책(1969-1979).
- 국토통일원(198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 통일원(1990), 통일백서.
- 통일원(1990), 통일독일과 한반도.

통일원(1990), 남북교류협력 방안연구.

통일원 교류협력국(1991. 7~1992. 11),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김동춘(1988. 여름),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 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31-48.

김민호(1988. 여름),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92-118.

김병오(1985),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한울.

김봉구(1992), “남북대학생교류의 범위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제3회 남북한 학생교류추진학술세미나.

김창순(1990. 8), “민족대교류와 범민족대회”, 북한연구소, 북한, 24-29.

김태완(1991), “한국의 교육통합정책”, 교육개발, 13(4), 50-53.

김태완·박재윤(1991),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도홍렬(1990. 12), “남북 대학생교류 장애요인 극복방안”, 분단국교수·학생교류추진학술세미나, 제2회 학술회의, 남북교수대학생교류자문위원회·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남북교수학술교류추진위원회, 37-63.

민주이념발전위원회(1991), “남북학자 교류방안”, 자유민주적 질서정착을 위한 제과제(Ⅲ), '91 민주시민논단, 65-77

박성조(1989. 12),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가 남북한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1(4), 32-92.

변경섭(1992. 8), “화해·협력 시대의 남북관계”, 북한, 92-112.

북한 편집부(1990. 9), “범민족 대회 시말기”, 북한, 42-50.

서병철(1988),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지식산업사.

서창배(1990),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방안모색: 대학인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대학생통일논문집, 241-279.

- 신세호(1991), “분단국의 교육통합정책”, 교육개발, 13(4), 40-43.
- 신용철(1982),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2(4), 153-183.
- 신용철(1990),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의 교류에 주는 시사”, 통일문제연구, 2(1), 102-155.
- 신용철(1991), “동서독간 교육관계의 발전과 통일”, 교육개발, 13(4), 46.
- 신용철(1991), “동서독의 접근과 인적 교류”, 평화연구, 3(1), 195-210.
- 신찬(1982), “서독 정치교육 실태를 돌아보고: 상·하”, 자유공론, 185, 136-143 ; 187, 141-149.
- 연합통신(1990),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평화당.
- 윤병익(1976), “분단국가의 통합이론에서 본 다각적인 남북교류제의 평가”,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2(2), 63-76.
- 윤병익(1984),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 통일논총, 4(2), 105-127.
- 이만기(1984),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 통일논총, 4(2), 128-153.
- 이장희(1988), “한반도에서의 동서독 통일모델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논총, 8(1), 101-145.
- 이재오(1984),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 이정춘(1990), “남북 방송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35-77.
- 이정춘·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청림출판.
- 이정희(1984), “서독의 통독정책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
- 이학내(1992), “한민족화합을 위한 남북체육교류의 진전과 전망”, 분단국에 있어 체육교류의 정치사회적 기능, 대한올림픽위원회.
- 장석은(1984), “최근의 동서독 관계와 교류현황”, 통일, 36, 70-76.
- 장석은(1986), “독일 청소년의 통일교육”, 북한, 57, 27-54.
- 장석은(1991), 분단국 통합과정, 통일연수원.

정대규(1980),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6
(2), 112-127.

정무장관(제2)실(1991),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정용석(1992), “대학가 변화양상과 남북대학생교류 추진방향”, 남북교수대학
생교류자문위원회·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남북교수학술교
류추진위원회, 제4회 학술회의, 15-22.

정호열(1985), “동서독의 상호교류 어디까지 왔나”, 치안문제, 68, 36-42.

조용남(1991), “통독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통일문제연구, 3(3), 323-
358.

최상철(1989), “남북체육교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의 모색: 통일
가족논문집, 제1집, 국토통일원, 169-252.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1992), 독일통합실태연구.

한태수(1971), “서독의 통독 신전략 분석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요소”, 통일
논총, 2(2), 141-156.

〈외국문헌〉

Bunjes, Ulrich (1986. 7), “Eine Zarte Pflanze”, Deutscher Bundesjugendring,
Jugendpolitik, 4-7.

Sauerhöfer, Werner (1992), “Die Jugendverband S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er Bundesjugendring, Kein Alter
Zum Ausruhen, 151-166.

Westermann, Klaus (1986. 7), “Was Heißt Normalität?”, Deutscher
Bundesjugendring, Jugendpolitik, 3.

부록

I. 동서독 청소년교류 관련 부록

1. 동서독 청소년교류 주요관련 일지
2. 동서독 청소년단체여행에 관한 합의서
 - (1) 동서독 청소년단체간의 청소년여행에 관한 공동성명(1982. 9. 20)
 - (2) 동서독 청소년 단체여행에 대한 협약(1987. 9. 1)
3.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성명서
 - (1) DBJR의 제1차 총회 결의사항(1949. 10. 3)
 - (2) DBJR 간부회의와 FDJ 중앙위원회간의 공동성명(1978. 1. 27)
 - (3) DBJR과 FDJ의 공동성명(1988. 10. 18)

II. 남북한 교류 및 청소년교류 관련 부록

1. 남북한 교류 주요관련 일지
2. 남북한 청소년교류 주요관련 일지
3.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추진 현황
 - (1) 청소년 유관단체들의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 (2) 대학생들의 북한방문 및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 (3) 남북한 대학생들간의 편지 및 FAX 교류 현황
4. 남북한 교류 주요합의서
 -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 (2)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 (3)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1992. 5. 7)
 - (4)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 (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III.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목록

I. 동서독 청소년교류 관련 부록

1. 동서독 청소년교류 주요관련 일지

일 시	관 련 내 용
1945. 5. 8 7. 31 8. 2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패망 주독 소련군군정청(SMAD)이 반파스시트적인 청소년위원회인 ‘중앙청소년위원회’를 구성 포츠담협정 체결
1946. 3. 7 5. 10.	소련점령지역내 유일한 청소년단체로서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이 설립 FDJ, 독일 통일과 전 독일의 청소년협동구조인 청소년연맹의 창설 문제를 제창 호헨 마이센(Hohen Meißen)에서 독일청소년연맹을 창설 취지하에 서부지역의 청소년단체와 소련점령지역의 FDJ 청소년 100명이상 참가
1947. 5. 11.	소련점령지역 보겐제(Bogensee)에서 서부점령지역 민주주의적인 청소년조직들과 FDJ의 몇몇 청소년단체 대표자간의 만남 알텐베르크(Altenberg)에서 FDJ와 서부지역의 청소년단체대표자들이 재접촉하여 독일 청소년연맹을 위한 구상을 발표
1949. 5. 23 10. 3 10. 7	독일 연방공화국(BRD)의 수립 독일연방 청소년연맹(DBJR)의 창설 독일 민주인민공화국(DDR)의 수립
1951. 6. 8.	서독에서 FDJ의 조직과 활동이 금지 동베를린에서 ‘제3회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
1952. 12	FDJ, 신교도 회원들에 대한 박해와 체포를 자행하면서 신교도 반대 캠페인 실시
1953. 6.	FDJ, 파업을 하는 데모대를 비판하고 공격
1954. 12.	DBJR, 비스바덴(Wiesbaden)의 위원회에서 FDJ와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유보
1955.	고데스베르크(Godesberg)에서의 DBJR과 FDJ간의 회담이 결실없이 끝남
1956.	FDJ, 탈스탈린운동을 시작
1958. 3.	DBJR, FDJ와의 모든 대화·교섭·협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

일 시	관 련 내 용
1959. 3. 4.	DBJR, 재통일을 위한 선언으로부터 결별 DBJR, 동부유럽국가와 청소년단체들과의 접촉을 시도
1961. 8. 13	베를린장벽 건설 DBJR, FDJ와 작별활동을 시작
1964. 4. 6. 10.	DBJR, FDJ의 '제3회 독일의 만남' 참가를 위한 조건을 형성함 DBJR, FDJ 담당자의 체포에 대항 DBJR, 렘사이드(Remscheid) 성명발표 DBJR, 동부유럽 청소년단체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동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1965. 3. 8	DBJR, 나움부르크(Naumburg)성명에서 동서독 청소년만남에 관하여 발표
1968.	소피아(Sophia)에서 개최된 '제9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동서독 청소년들이 공동참가
1970.	DBJR과 FDJ사이 첫번째 의견교류 시작
1972. 4 5. 12. 21	DBJR, 동서독 청소년교류사업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 '동서독 일반통행협정' 체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1973. 8.	동베를린(E.Berlin)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서독청소년들이 참가, DBJR과 FDJ간의 접촉
1975. 1.	DBJR, FDJ를 서독으로 초대하여 첫번째 비공식적인 대화 시도
1976. 1.	FDJ, 동베를린(E.Berlin)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DBJR의 간부들을 초대하여 DBJR과 FDJ간의 첫 공식적인 대화성립
1978. 1. 7.	본(Bonn)에서 DBJR과 FDJ 두단체간의 정규적인 교류실시를 위한 협정 체결 쿠바 하바나(Habana)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동서독 청소년들이 공동참가
1979. 4.	DBJR 사절단, FDJ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방문, 당시 국민교육장관 마고트 호네커(Margot Honecker)와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확대에 관한 논쟁을 벌임
1981. 1. 4.	DBJR의 의장단과 독일청소년위원회의 중앙부처간의 정상급회담이 개최, 이 회담에서 서독 대표단과 동독의 청소년·가족·보건성장관인 안체·후비(Anche Hubie) 사이에 열띤 토론 '동서독 이주협정' 체결

일 시	관 련 내 용
1981. 10.	서독의 슈미트(Helmut Schmidt)수상과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Erich Honecker)의 만남,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강화에 대해 합의
1982. 9.	DBJR과 FDJ, 동서독 청소년의 관광여행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후 합의서 체결
1983.	• 동서독 청소년 관광여행 진행 • 서독내독성이 FDJ가 정치적 선동을 위하여 동서독청소년 관광여행을 이용하여 왔다고 보고한 헌법보호보고사건(Verfassungsschutzbericht) 발생
1984. 5.	FDJ,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청소년 관광여행 금지
1985. 8.	1984년 조정된 헌법보호보고로 인하여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청소년 관광여행이 다시 재개
1986. 5. 6 10.	• 동독과 서독간의 문화협정(Kulturab Kommen) 체결: 문화협정 제11조에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이 규정 • 체르노빌(Chernobil) 방사능참사사건 발생 • 바덴-뷔텐베르크주(Baden-Württemberg)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바덴-뷔텐베르크주(Baden-Württemberg)로의 모든 청소년여행이 취소 • 서독의 자아르로이즈(Saarlouis)도시와 동독의 아이젠취텐슈타트(Eisenhüttenstadt)도시, 동서독 도시간의 최초의 도시자매결연
1987. 6. 9.	서독의 자르브뤼겐대학(Saarbürge)과 동독의 라이프찌히대학(Lepzig)간의 최초의 대학자매결연 호네커(Erich Honecker), 서독방문 DBJR, 동서독 청소년만남의 전망에 관한 회의 개최 서독의 청소년여행사와 동독의 FDJ 청소년관광여행사간에 동서독 청소년단체여행에 관한 협약 체결
1988. 5. 6 10.	동서독 대학생교환 프로그램 실시 FDJ 중앙위원회의 제1서기장 에버하르트 아우리히(Eberhard Aurich)가 DBJR을 방문, DBJR와 FDJ 두 단체간의 공동사업을 위한 공동언론 성명을 발표
1989. 6. 11. 9	DBJR, 동서독 도시 자매결연을 통하여 도시청소년연맹의 지지자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교류 동독, 서독과 서베를린에 대한 모든 국경을 개방
1990. 2. 19 10. 3	브란덴부르크 부근의 장벽철거 동서독 통합

2. 동서독 청소년 단체여행에 관한 합의서

(1)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과 자유독일청소년단(FDJ)간의 동서독 청소년여행에 관한 공동성명 (1982. 9. 20, 본)

1982년 9월 19일과 20일, DBJR 위원장 요제프 홈베르크(Josef Homberg)가 FDJ 중앙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DBJR과 FDJ간에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DBJR 대표단으로 게어힐트 프라쉬(Gerhild Frasch), 한스 브라우저(Hanns Brauser), 우베 요힘스(Uwe Jochims) 그리고 DBJR 사무담당자 울리히 분예스(Ulrich Bunjes)가 참가하였다. FDJ측에는 중앙위원회 제1서기장인 에곤 크렌츠(Egon Krenz)와 제2 서기장인 에버하르트 아우리히(Eberhard Aurich), 서기관 군터 레트너(Gunter Rettner), 사무실 회원인 클라우스 이히러(Klaus Eichler)와 쿠르트 잔(Kurt Zahn)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 만남으로 인하여 1978년 1월 27일 공동성명에서 발표하였던 합의서가 발효되었고, 두 단체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토대가 형성되었다. DBJR 대표단은 동독의 인민 교육부장관인 마고트 호네커(Margot Honecker)와 대화를 가졌는데, 이 대화는 개방된 분위기속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DBJR과 FDJ는 국제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두 단체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는 어떠한 이성적인 대안은 없다. 그러므로, DBJR과 FDJ는 이제 청소년과 그들의 미래에 보다 관심을 갖고, 국제적 만남에서 대립이나 대결 대신에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이며,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중앙간부위원회 서기장인 호네커(Honecker)와 서독의 수상 슈미트(Schmidt)의 베어베린제에서의 만남에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DBJR과 FDJ의 위

치는 재확인되고 인정되었다. 또한, 이 만남에서는 동서독은 전반적인 평화정책을 통하여 유럽과 세계가 결코 다시금 전쟁의 상태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기여한다는 것을 두 개의 독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서 강조되었다.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유지는 양 국가의 청소년단체 공동활동사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동서독이 가장 좋은 이웃 관계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역할과 협동형식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서독 청소년여행 교류의 발전은 많은 주목을 받는다. 양측 대표단은 동서독 청소년 관광여행이 DBJR과 FDJ간의 공동활동을 보다 확대한다는 데서 동의한다. 양측은 동서독간의 청소년 관광여행이 확대되고, 모든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지방의 적합한 양식에 따라 공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다양한 형식의 청소년 관광여행은 동서독간의 접촉을 더욱 의미있게 한다. 동서독 청소년을 계속 지원하여야 하고, 동서독 청소년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DBJR과 FDJ는 동독의 청소년여행사인 청소년관광여행사와 서독의 여행 사업가들사이의 동서독 청소년여행에 관한 최근 협약을 환영한다. 양측은 청소년 관광여행으로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두 단체간의 원만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서독의 청소년여행사와 동독의 FDJ 청소년관광여행사간의 서베를린에서의 동서독 청소년 단체여행 교환에 대한 협약 (1987. 9. 1)

이 협약은 평화유지, 긴장완화, 공동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한 일환이다. 동서독간의 여행은 국토와 동포에 대한 인식과 동독과 서독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삶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여행 참여자는 30세까지로 규정한다.

여행프로그램에는 청소년간, 사회조직체의 대표자간의 만남과 청소년의 자유시간 편성과 각 주의 방문과 시여행 등 기타의 방문계획이 포함된다.

단체의 숙박은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집, 청소년 여행자호텔 또는 청소년 휴양지에서 이루어진다.

양측은 지속적인 여행안내자를 통하여 단체의 보호를 보증한다. 그때 그때의 목적지와 동독에서의 서베를린으로의 귀향에 대해서는 여행단을 파견한 측이 책임을 진다. 일을 행하는데 있어 예약과 취소는 부록 1에서 협정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협약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전히 실현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이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옹호할 수도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모든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 통지한다.

단체의 입국과 출국은 현행의 협약(부록 2)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행체류의 목적을 위하여 여행참가자는 그들이 체류하는 동독이나 서베를린의 법규와 숙박지의 사용조건 및 거주지의 주의사항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이 협약은 1982년 9월 20일 체결되었던 서독의 DBJR과 동독의 FDJ의 “공동 성명”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1971년 12월 20일 상호 여행과 방문의 편의와 개선에 대한 서독과 동독 정부간의 협정을 토대로 체결된 동독의 여행사와 서독의 유한회사인 독일 여행사간의 여행협약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 협약으로 인한 논쟁이나 또는 이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양측은 유효하게 조정할 권리가 있다.

이 협약의 개정과 보완은 일련의 서류양식과 양측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 협약과 명확하게 관련된 외교문서, 편지와 텔렉스 교환이 필요하다.

부록 1과 2 그리고 정가목록은 이 협약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이 협약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베를린	1987년 9월 1일
동 독	서 독
FDJ의 여행사 “청소년 여행”	독일 유스호스텔 서베를린 지부

〈부록 1〉

1. 양측은 1988년의 단체교류를 위한 분담액을 1987년 10월 15일까지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추가적인 예약은 여행개시 6주전까지는 가능하다.
2. 모든 신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 여행번호/ 단체의 표시
- 참가자의 수
- 체류기간
- 체류장소
- 숙박방법
- 교통수단
- 원하는 프로그램
- 단체의 사회적 구성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불완전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약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여행개시 21일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강연, 기업의 사찰은 여행개시 8주전까지 알려야 한다. 기업이나 조직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6주전에 비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버스에서 기차 등으로의 교통수단의 변경은 늦어도 여행개시 28일전까지만 받아들이며 실시할 수 있다. 모든 변경은 상대방의 서면으로 된 허락이 필요하다.
4. 파견하는 측은 그들의 단체에게 보증표(voucher)를 공급하며, 이것은 확증된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5. 단체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수행들은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단체여행의 취소는 여행개시 35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무료로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비용을 물게 된다. 그 비용은 여행개시 7일전까지는 참가자의 날짜 당 각 0.5일분을, 6일부터는 참가자의 날짜당 1일 각 1일분씩 계산한다.

7. 사용하지 않은 노정분담액의 나머지는 적절한 시기에 환불되는데 여행개시 8주전에 미리 예약요구를 하여야 한다. 수령하는 측은 단체의 신청에 있어서 노정분담액내에서 체류하려는 나머지 수용력에 대하여 첨가한다.

〈부록 2〉

1. 동독으로의 입국은 적법한 여행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 서베를린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 다른 국가의 시민을 위한 체류인가와 적법한 여행패스
 - 서베를린의 적법한 체류허가서
 - 어린이 증명서
2. 필수적인 입국서류를 여행개시 4주전에 동독의 “청소년여행사(Jugend-tourist)”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2개의 완벽한 총여행목록이 필요하다.
 - 여행주체자
 - 여행번호
 - 체류기간
 - 체류장소
 - 국경통과위치와 도착시간
 - KOM의 경찰회장
 - 참가자의 개인명세서: 현재의 번호, 이름, 성, 생년월일, 출생지,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여행패스, 체제증명서의 번호, 국적
 - 참가자당 완전하게 기록된 두개의 동독 입국 신청서동독 입국에 대한 신청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되돌려준다.
3. 동독의 청소년여행은 기간조정기관에 늦어도 여행개시 14일전에 비자의 수령을 위하여 B-증명서를 보낸다.
4. 비자는 허락된 국경통과위치에서 총여행목록과 연결된 B-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발급받는다.

3.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성명서

(1) DBJR 제 1 차 총회 결정 사항 (1949. 10. 3)

독일 청소년연맹 창설의 취지하에 결합된 청소년단체들은 동부지역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공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동부지역은 지금의 상태로는 그러한 공동사업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의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합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은 승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서독에서의 허가는 동부지역의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부지역에서 모든 청소년들의 관심은 FDJ는 동독에서의 유일한 청소년단체로써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FDJ의 비민주적인 요구를 거절한다. 민주주의적인 기본법과 제한되지 않은 자유의 기반위에서의 독일의 통일과 독일 청소년의 단일성은 우리 모두의 공통되는 소원이다. 따라서, 동부지역에서의 FDJ의 독점적인 노력은 모든 젊은 독일인의 공동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규정하여야만 한다.

(2) DBJR의 간부회의와 FDJ의 중앙위원회와의 공동성명 (1978. 1. 27, 본)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DBJR과 FDJ는 동서독 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약을 실현화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유럽과 전체적인 삶에서의 안정과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최종합의서를 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양측은 동서독 관계 및 유럽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계속 공헌할 의지를 나타냈다. 양측은 통일된 민족강령과 헬싱키의 최종합의서에 나타나 있는 목적과 원리가 완전히 실현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DBJR과 FDJ는 모든 국가의 주권적인 평등을 위하여 독립, 자립, 통합, 질서의 유지 또는 폭력의 적용, 국경선의 불가침, 국가간의 공동사업 그리고 내부적인 용무에 있어서 불간섭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인간권리와 기본법을 인식하고, 동등한 권리와 민족자결권을 지지하였다. DBJR과 FDJ는

1971년 9월 3일 프랑스와 소련, 영국,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사이의 협정의 엄격하고 완전한 준수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DBJR과 FDJ는 그들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정하였다.

- DBJR과 FDJ의 활동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정보의 교환을 양측에 요구
- 상호 발전과 공동활동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DBJR과 FDJ의 공식적인 대표단의 정기적인 교류
- 협정된 주제를 위하여 학생 대표단의 교류
- DBJR과 FDJ는 공동으로 세미나 계획
- DBJR과 FDJ의 회원조직의 적절한 접촉은 환영
-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교류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상의

(3) DBJR과 FDJ의 공동성명 (1988. 10. 18)

...지난해, 상이한 정치관 및 종교적 견해를 가진 동서독 청소년단체들간의 공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데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양측은 더 많은 청소년 조직을 계속 개방하여 공동사업을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DBJR과 FDJ는 동서독 도시 자매결연의 체결과 증가를 하나의 관심있는 발전으로 보았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도시 자매결연은 청소년들간의 선입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동서독 청소년 관광여행의 발전에 부응해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982년 9월 20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매우 효력있는 토대로서 증명되었다. DBJR과 FDJ는 FDJ의 청소년관광여행사와 서독 유스호스텔, 서베를린 지부간에 체결된 동서독 청소년 여행에 관한 협약을 받아들였다.

FDJ 중앙위원회 제1서기장 에버하르트 아우리히 방문을 기회로, DBJR과

FDJ는 공동의 발전과 미래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항들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 DBJR과 FDJ는 두 단체간의 의견교류를 지속하며, 동시에 공동사업을 통한 평화유지의 문제, 반파시즘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및 여성의 사회적 상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2. DBJR 간부회의와 FDJ 중앙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FDJ의 코트부스 지역과 자르주 청소년연맹의 간부사이의 협약의 결정을 후원하였다. DBJR과 FDJ는 첫 단계 과정으로 지방분권화된 관계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계속적인 진행을 위한 공동제안을 만들었다.
3. DBJR과 FDJ는 동서독간의 청소년 관광여행의 확대와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초대한 지방에서 그 지역 청소년여행단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4. 두 단체는 동서독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학생 대표단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균등하게 교환할 것이다.
5. DBJR과 FDJ는 청소년 문화사업영역의 교류를 주도하여야 한다.
6. DBJR과 FDJ는 계속 보다 많은 청소년 조직을 포함하여 유럽속에서 공동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2차 세계대전 50회 기념일을 중요한 시점으로 본다. DBJR과 FDJ는 전 유럽 청소년과 대학생 공동사업의 문제에 대한 의견교류를 강화하고 공동의 주도력을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양측은 DBJR의 간부회의와 FDJ 중앙위원회간의 정보와 의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정하였다.

II. 남북한 교류 및 청소년교류 관련 부록

1. 남북한 교류 주요관련 일지

일 시	관 련 내 용
1945. 12.	모스크바 「미·영·소 3상회담」, 남북한 지역간 교역 및 우편, 통신교환실시
1948. 4. 21	평양, 「대민족회의」 개최, 김구·김규식 참여
1949. 6.	북한, 남북정당사회단체 선거위원회의 구성제의
1950. 4. 6·25	남북한간의 우편, 전화교환 중단 6·25 전쟁 발발
1953. 7.	휴전협정 조인
1954. 4. 26 10. 10	「제네바회담」, 남한의 변영태외무장관, 북한의 남일외상 참가 : 북한의 남일외상, 남북한대표로 구성된 「전조선위원회」 구성과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제의 북한, 국토통일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 제의
1955. 3. 7	북한, 남북한 군대감축과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1956. 6. 2 10. 14	북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회의 개최 주장 북한,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문학작품 및 문학교류 제의 : 남북 작가들간, 북의 작가동맹과 남한의 문학예술단체들간의 상호 서신과 작품교환제의, 경험교환회 및 연구회의 조직, 작품취재를 위한 상호여행의 길 개방
1957. 9. 2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1차 회의에서 남북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
1960. 6. 18 8. 15 11. 19	서상일 사회민주당 대표, 「남북문화교류」를 제창 북한, 8·15 경축대회에서 「남북연방제」와 남북경제·문화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안 제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8차 회의에서 영화필름교환 제의
1961. 3. 3 4. 26	북한, 문예총 결성대회에서 문학예술의 교류 및 민족문화예술의 통일적 발전 도모 제의 북한, 외세배격 주장, 남북제정당과 사회단체회의를 개최, 남북 경제위원회 수립 제의, 남북서신왕래 시도, 남북선거 실시 제의

일 시	관 련 내 용
1961. 5. 9 8. 16	서민호 민의원 부의장, 서신교류와 1964년 동경올림픽 공동출전을 위한 체육인 및 기자교류 제의 북한, 「남북연방제」를 제의
1962. 10. 23	북한, 1만톤의 양곡원조 제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문화 및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협상 제의
1963. 1. 29 5. 17, 7. 26	스위스 로잔느, 「제18회 동경올림픽」에 파견할 남북한 단일팀구성을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홍콩 페닌슐라호텔, 제 2, 3차 남북체육회담
1964. 3.	북한, 30만톤의 쌀, 강철 10만톤, 10억 Kwh의 전력, 1만톤의 화학석유 및 시멘트 등 물자제공 및 200만명 실업자 구제 제의
1966. 6. 8 9. 17	박정희대통령, ‘남북통일문제는 70년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통일논의 금지 북한 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남북공동미술전람회개최 제의
1968. 1. 21 1. 23	북한, 청화대 기습사건 북한, 푸에블로호 사건
1969. 4. 15	북한, 미공군 EL-12기 격추사건
1970. 8. 15 10.	박정희대통령,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 : 인도적 경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표명과 선의의 경쟁을 제의 북한, 울진·삼척 대규모 무장유격대 침공사건
1971. 4. 12 8. 12 8. 20 9. 20 11. 2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 남북한 문화·예술 등 다방면적 교류와 협조실시 제의 대한적십자사, 남북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남북적십자 제1차 파견원 접촉 : 쌍방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및 수락 문서교환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개최 남북한의 실무자간 비밀접촉시작
1972. 4. 29 7. 4 8. 29~9. 2 9. 12~16	서울~평양을 잇는 남북직통전화가 비공개리에 개통 (1976년까지 계속 운용) 「7·4 남북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 개최 (평양)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 개최 (서울)

일 시	관 련 내 용
1972. 11. 4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남북 조절위원회 구성
1973. 3.	남한,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제의
4.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 회의에서 남북군인 10만명 감축, 남북 평화협정 제의
4. 16	김일성, 시하누크 환영대회에서 남북조절위원회에 남북한 정 당, 사회단체 대표와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키려는가 조절 위원회와 별도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각층 인사가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 개최 주장
6. 12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서울측 이후락위원장이 예술문화분야에서의 인적·물적 교류실시를 제의
6. 23	박정희대통령,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김일성, 「5대요강」 발표
8. 1	이후락배구협회장,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서울개최 「제2 회 아시아 배구코치 강습회」에 북한 초청
8. 28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남북대화 일방 적 중단선언
1974. 8. 15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발표 : ①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② 남북대화 성실진행 ③ 토착인구비율에 따른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제2항에 남북간의 상호 문호개방·신뢰 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실현을 천명 • 8·15 대통령 저격사건 발생
1975. 1. 14	박정희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다음 사항의 수락 을 촉구 ①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② 휴전협정 효력존속 전제하의 유엔군사 해체 ③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또는 대한민국의 단독유엔 가입 반대입 ④ 남북대화의 즉각 정상화
1976. 4. 12	남북조절위 서울측, 남북한 고미술품·고고학자료 상호교환 및 전시, 고고학자의 교류, 쌍방합의에 따라 해외에서의 공 동전시 제의
5. 6	방콕의 「제18회 아시아 청소년축구대회」시 대한축구협회 김종하 회장이 북한 축구팀 김종형 단장에게 남북한 축구교 류를 제의

일 시	관 련 내 용
1976. 7. 3	남북조절위 평양측, 현 남한 정부교체와 「대민족대회」 개최 주장
8. 15	박정희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남북대화 무조건 재개와 남북조절 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요구
8. 18	북한, 판문점 도끼살인만행 자행
1977. 1. 25 10. 19	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박정희대통령, 평화통일 기본원칙 천명 ①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② 상호 문호개방, 교류협력 실천 ③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12. 9	북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일체의 남북대화 완전중단 선언
1978. 1. 18	박정희대통령, 통일정책의 기본방침은 「선평화 후통일」임을 천명하고 대화를 통한 교류확대와 문호개방을 촉구
6. 23	박정희대통령, 민간경제협정추진 및 협의구성 제의
9. 9	대한사격연맹, 북한의 서울세계사격대회 참가 제의
1979. 1. 19 2. 20	박정희대통령,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대화 제의 북한 체육지도위 위원장,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탁구 단일팀구성문제 제의
2. 27 ~3. 12	제1~4차 남북한탁구대표회담 개최,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참가문제 협의
3. 9	제3차 남북한탁구대표 회담, 대한탁구협회가 남북한간 전반적인 체육교류문제 협의 제안
6. 11	김영삼 신민당총재, 남북접촉 용의표명
7. 1	한미공동성명, 남한, 북한, 미국의 3자 회담 제의
12. 20	북한올림픽위, 대한체육회장에게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대회 참가의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1980. 1. 11	남북조절위 서울측, 모스크바올림픽 후 전반적인 체육교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1. 22	북한, 반한해외동포인사들에게 김일명의로 통일을 위한 모임을 제의하는 편지발송
1. 29	대한올림픽위원회 박종규위원장, 올림픽대회의 남북한 단일팀 참가를 위한 전반적인 남북한 체육교류 실시를 제의
2. 6	남북총리간 대화를 통한 제1차 남북실무대표 접촉
2. 7	남북직통전화 재개통
10. 10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및 10대 시정방침 제시
1981. 1	북한, 「민족통일추진대회」 제의

일	시	관	련	내	용
1981.	1. 12 6. 5 6. 19 11. 16	전두환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전두환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 대한체육회장, 체육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 제의 :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구성 참가와 남북체 육인회담 문공부장관, 고고학 및 미술사 분야에서의 교류 제의 : 자 료교환, 교환전시회, 공동연구 등			
1982.	1. 22 2. 1 2. 10 2. 25 8. 15 1. 18 2. 1 6. 1 10. 9	전두환대통령,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의 : 남북한 기 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상대방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휴전체제유지,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사회개방추진 국토통일원장관,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시 북한, 「남북정치인연합회의」 제의 국토통일원장관,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 전두환대통령,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거주동포 자유왕래 천명 북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제의 국토통일원장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제의 전두환대통령, 서울 IPU총회 북한대표 참석 제의 버마사태 발생			
1984.	1. 10 3. 30 4. 9 4. 30, 5. 25 5. 4 6. 2 8. 20 9. 8 9. 14 9. 29~10. 4 10. 4 10. 12 11.	북한,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 제의 북한, 「제23회 L.A.올림픽대회」 참가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제23회 L.A.올림픽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위한 제1차 남북한 체육대표 회담 개최 제 2, 3차 남북한 체육대표 회담 사마란치 IOC위원장, IOC중재하 「로잔느」에서 남북체육회 담 개최 제의 북한, 「제23회 L.A.올림픽대회」 불참 발표 전두환대통령,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대북 기 술·물자 무상제공 용의 표명 북한,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 한국적십자총재, 수재물자 제공 제의 수락 및 실무접촉 제의 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수락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에서 북적 수재물자 인도·인수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한국적십자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북측 예비접촉 제의 한국 신병현부총리, 남북경제회담 제의 문공부장관, 우리말, 전통민속문화, 천연기념물 등 민족유산 의 발취 보존연구를 위한 협력을 제의			

일 시	관 련 내 용
1984. 11. 15 12. 11	제1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 남북한 교역품목 및 경제협력 방안논의 북한 외무부장, 미국 국무장관에게 「3자회담」 제의
1985. 1. 1 1. 9 4. 9 5. 17 5. 27~30 6. 20 7. 30 9. 18 9. 20~23 10. 6 10. 8~9 11. 20	김일성,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가능성 시사 전두환대통령,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제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 국회회담 개최 제의 제2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서울) :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실시를 합의 제3차 남북경제회담 :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남북경제협력기구 설치에 관한 합의서 채택하기로 합의 북한 정무원 부총리, 88서울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주최 및 남북한 단일팀 출전 주장 제4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교환방문 실시 : 65가족 92명 상봉 국제육상연맹, 87년 서울에서 열릴 월드컵 마라톤대회 기간 중 남북한을 관통하는 역전경주대회 개최 제의 IOC주재, 제1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개최 제5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1986. 1. 1 1. 20 5. 13 6. 23 10. 21 10. 30 12. 29	김일성신년사, 최고위급 정치회담 개최 시사 남북한 회담대표단(경제·적십자·국회)공동성명 : 「팀스피리트 '86」 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회담을 연기 북한 사노청 위원장, 남북학생회담 개최 용의 시사 북한 정무원,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 제의 북한 방송보도, 금강산발전소 착공식 진행 이규호건설부장관,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중지 촉구 이재명 건설부 수자원국장, 공유하천·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남북한 당국간회담 호응 촉구
1987. 1. 11 3. 30 4. 3 5. 20 7. 23 8. 3 8. 6	북한 정무원 총리,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의를 제의 북한 정무원 총리, 총리회담 위한 예비회담 제의 미국, 대북한 인도적 교역추진 제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문제 관련 한국정부의 견해 비난및 7개항의 공개질문 북한, 한반도에서의 단계별 군축실현을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한국 외무부,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북한 외교부, 남·북한·미국 3자 외무장관회담 제의

일	시	관	련	내	용
1987.	8. 15	전두환대통령, 남북대화재개 및 88서울올림픽 동참 촉구			
1988.	1. 1	김일성,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			
	1. 12	북한올림픽위원장, 88서울올림픽 불참선언			
	2. 25	노태우대통령 취임사, 한반도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대화 문호 개방			
	3. 1	노태우대통령, 서울올림픽에 북한동포 참여환영 표명			
	3. 29	서울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김일성대학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하여 남북학생회담 제의			
	4. 7	북한 기독교연맹중앙위원회, 「남한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KNCC선언 지지 및 연대투쟁 선동			
	4. 21	노태우대통령,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시대 개막」 선언			
	5. 27	김일성, 체코공산당총비서 환연연회연설에서 남북한의 다목적 접촉과 회담 및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주장			
	6. 3	이현재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 의제 제2항으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인적교류 실현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			
	6. 9	국토통일원장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서 학생교류문제 우선적 협의 용의 표명			
	6. 10	최광수의무부장관,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군축 3단계 접근방안 제시			
	7. 4	재야, 임진각에서 「7·4 남북공동성명 계승과 통일염원제」와 대학로에서 「7·4계승 및 공동올림픽 생취를 위한 시민대회」를 실시			
	7. 7	노태우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 발표			
	7. 15	김영식문교부장관, 남북학생교류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당국 회담 제의			
	7. 19	최광수의무부장관, 해외동포의 남북한방문을 자유화 및 남북한 방문 해외동포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남북한 관계당국 회담 제의			
	7. 21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			
	8. 15	노태우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제의			
	8. 19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			
	9. 3	정한모문공부장관, 북한 및 공산권 자료 대폭 공개 결정 발표			
	9. 8	김일성, 전제조건하의 남북정상회담 문제 언급			
	9. 19	노태우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10. 4	경제기획원장관, 7·7선언 경제분야 후속조치 발표			
	10. 18	노태우대통령,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			
		① 비무장 지대안에 평화시 건설 제의			
		② 남북정상회담 재제의			
		③ 「동북아 평화협정회의」 제의			

일 시	관 련 내 용
1988. 11. 11. 16 12. 9 12. 21 12. 28	북한,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 제시 북한 정무원 총리,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북한 「조평통», 남측 범민족대회추진본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하여 「범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예비실무 대표접촉 제의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제의 강영훈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제의
1989. 1. 1 1. 12 2. 8 3. 3. 9 3. 13 3. 31 6. 12 9. 27 10. 3	김일성,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문교부장관, 남북한 학생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기구 발족담화 발표 제1차 남북고위급 예비회담 개최 호주 시드니, 세계아이스하키 C폴 선수권대회에서 남북한 경기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참가의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대학생교류회담 제의 국토통일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 대표 접촉 북한, 남한당국과 정당단체들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민족통일 협상회의 소집 제의
1990. 1. 1 1. 17 7. 20 7. 26 7. 27 8. 1	• 노태우대통령, 남북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 • 김일성, 남북당국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제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IPU총회」 남북단일대표단 구성 참가제의 • 노태우대통령, 「8·15 민족대교류」선언 • 강영훈국무총리, 「8·15 민족대교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북한대표단,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참가 관련 판문점 통과 거부 • 제9기 1차 회의에 「조국통일 5개방침」 제의 • 국토통일원,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 관련 「전민련」 앞으로 제3차 예비회의, 7. 30~31 평양개최 제의 • 제일교포 이대경목사, 정부의 승인하에 최초로 북한 방문 •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제3차·예비회의, 7. 30~31 평양개최 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일	시	관	련	내	용
1990.	8. 2	홍성철	국토통일원	장관, 「7·20 대통령 특별발표」관련 기자회견 : 각계각층의 「범민족대회」 참여와 「민족대교류」기간중의 방북희망자 신청접수(8. 4~8. 8)를 발표	
	8. 7	제3차 「범민족대회」	평양예비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 당초 계획대로 8월 15일에 「범민족대회」는 관문점에서 거행과 제1, 2차 예비회의에서 합의한대로 대회장소·의제·참가자격 등을 확정	
	8. 10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학술토론회, 문화행사, 백두—한라 대행진	공동개최를 위한 「전민련」과의 실무접촉 방송 제의	
		북한 「조평통」	서기국장, 「민족대교류」기간중 방문자명단 교환	관련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대남 전통문	
	8. 12	북한 「학생위원회」	위원장, 「서충련」과 실무접촉	방송제의 홍성철통일원장관, 「민족대교류」기간중 특정단체 소속인원	
		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성명과 함께 이들의 명단전달과 신변 안전보장각서	접수를 위한 쌍방당국간 연락관 접촉제의	
	8. 13	북한 「천주교인협회」	대변인, 「정의구현사재단」과 실무접촉	방송 제의	
	9. 4	서울,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연형묵총리의 90명 남한 방문		
	9. 11	노태우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9. 18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11차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92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구성문제	협의 제의		
	10. 9~13	「남북통일친선축구대회」	개최(서울, 평양)		
	10. 10~14	뉴욕 「남북영화제	개최」		
	10. 14~24	「범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황병기 교수의 14명 방북		
	10. 16~19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양), 강영훈총리의 90명 북한 방문		
	12. 8~13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	개최, 평양민족음악단 33명 서울 방문		
	12. 31	「남북교류협력기금법」	제정		
1991.	4.	천지무역과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 남북한간의 직접교역	합의 : 남한의 쌀과 북한의 석탄과 시멘트의 바터식 거래 계약		
	4. 24~5. 6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일본 지바), 여성팀 단체전 우승		
	6.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7.	• 경북 고령군의 「북한지역 군단위 지방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청		

일 시	관 련 내 용
1991. 7.	• 연방여행사장 우하영, 남북관광교류 협의 접촉신청 • 한민족철학자대회(주관: 서울대 소광희교수)에 북한인사(학자 10명 언론인 5명, 수행원 5명) 참가의사 표명 • 전대협 소속 성승용·박성희, 베를린 「남북청년학생 해외 통일 대추전」 참가 및 입북
7. 8	체육청소년부장관, 「남북체육교류 3단계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8.	• 서울 종로구의회 구의원 정명호 등(11명), 「평양시 중구역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접촉신청 •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최경자원장), 「남북실생활 의류전시회」 개최 신청 • 보라꽃꽃이회(오부자), 「꽃꽃이 교류전」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청
8. 12	서울지역 대학생기자연합회, 북한지역 실상취재를 위한 남북한 예비실무접촉
8. 12~14	연길시, 「제2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8. 12~16	연길시, 「인문지리학국제학술회의」 참가
8. 17~18	사할린, 「91남북통일전통미용품축제」 참가
8. 19~24	연길시, 「91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 참석
8. 22~26	연길시, 「91국제전자·정보·통신학술대회」 참석
8. 29~31	장춘시, 「제2차 동북아경제기술발전학술회의」 참가
9.	• 노희수(이산가족), 재북가족과 서신교환 신청 • ‘사랑의 세계’ 이진상이사장, 남북공동음반제작을 위한 음악공연협의 신청
9.	• (주) 삼우 정기두, 수산물 직거래협의 신청 • KBS 손영호외 7명, ABU총회시 북한중앙방송과 방송교류협의 신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황인철외 18명, 「제2회 아태법률가회의」 참석 신청
9. 9~13	유종하외무부차관 등 10명의 우리 정부대표가 평양에서 개최된 「77그룹 아주그룹회의」에 참가
9. 17	남북한 UN 동시가입
9. 17~21	바르셀로나, 한국미래학회 전득주외 11명, 「세계미래연구협의회」 참석
9. 24~10. 1	곽선희목사, 남북한 종교교류 협의를 위해 방북
9. 27~10. 4	교통부 박남근관광국장등 3명, 「제9차 세계관광기구 총회」 참석
10.	• 국립국어연구원안병희 원장, 남북언어통일관련 국어교류제의 • 영화감독 이장희외 1명, 「남북영화제」 참가 신청 • 국민일보 이희석기자와 1명, 북한종교현황취재 신청

일 시	관 련 내 용
1991. 10.	• 선우관광의 이근엽, 북한과 관광교류협의 신청 • 연예인 홍요섭, 통일염원 합수행사제의 신청
10. 9	산타무역 이연익, 경제협력사업 협의
10. 15~21	평양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 UNDP회의」 참석차 대외 경제조정실장 김인호등 3명의 정부대표가 북한을 방문
10. 18~22	서울시 한의사회 임덕성회장등 9명, 「국제전통의학대회」 참석
10. 22~2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정원식국무총리외 90명 방북
10. 29~30	남북한 불교지도자들간의 남북한의 불교교류 및 불교유적답사를 목적으로 한 「불교대표자회의」가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되었으나 구체적 합의사항은 없음
10. 29~30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등 22명, 로스엔젤레스에서 「통일기원합동법회」
11.	• 천도교교령 오익제, 천일기념식합동봉행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청 • 조양축산 김재원대표, 북한축산실태 파악 및 축산교류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청 • 세방여행사 윤경로, 북한과 저작권 설정계약 협의신청
11. 25~29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서울) 개최, 여연구외 15명 서울 방문
11. 22	오사카에서 개최된 「환경해경권 국제심포지엄」에는 구본호 KDI원장 등 참석
12. 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1992. 1.	• 경희대 원병오교수, 비무장지대내 생태계 공동조사 제의 • 외환은행 홍재형은행장, 남북경제교류 지원을 위한 코레스계약 체결 제의 • 다남홍업 이지룡대표등 2명, 영화제작을 위한 북한현지촬영 제의 • KBS 서기원사장, 북한조선방송위원장 초청 제의 • 테크노월드관광 박형일, 관광교류 협의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이승우서울지회장, 「남북어린이 환경보호 글짓기」 공동개최 제의
4.	• 단국대 음대 윤인숙교수, 「북한 전통개량악기 제작실태조사 및 국내반입」 제의 • 서울방송 표재순전무이사, 「북한지역 자연환경 촬영」 제의 • 서울시 축구협회 백금봉 수석부회장, 「서울-평양간 경·평축구대회 부활」 제의 • 민족통일불교중앙연합회 김태완의장, 남북한 불교교류 제의 • 무역협회 박용학회장등 47명, 남북경제교류협의 신청

일 시	관 련 내 용
1992. 4. 28~30	경제기획원 운영대동 4명, 북경 「UNDP 관련 실무작업반 회의」참석
4. 28~5. 4	평양 「동북아경제포럼」과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장희 원장등 18명, 나고야를 거쳐 북한을 방문
5.	• 목우회 오승우회장, 「조국산하전」개최 제의 •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협의회 송월주회장, 남북불교인교류 제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신대진사장, 남북농산물 직교역 협의
5. 5 ~8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 사업」 합의
5. 6	대한탁구협회 김찬제전무이사, 「제41회 세계탁구선수대회 우승컵」 인수를 위한 판문점 접촉
5. 17~18	「제8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 외교안보연구원 공로명원장과 북한군축 및 평화연구소 최우진부소장 등 남북한 정부관계자 및 학자들의 접촉
5. 19	동아일보 이낙연 동경특파원등 16명, 북한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최우진부소장 인터뷰
5. 22~23	한국 국방연구원 차영구책임연구위원등 2명, 「북태평양 안보 협력 회의」 캐나다 오타와 참가
6.	대한적십자사 주관(당국지원)의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 사업과 관련 신청
6. 3	여연구명의, 전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우정부회장등에게 보내는 대남전통문을 통하여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차 평양세미나」관련, 남한 참가자들의 9월초 연가개최 요청에 동의한다고 표명
6. 8	삼아상사 심웅래 대표외 1명, 남북농수산물교역, 북경에서 협의
6. 16~17	국제통신등에 사용할 「기계화를 위한 한글 로마자표기법」 남북한 단일안 합의성사로 ISO(국제표준화기구)회의에 참가
6. 23~25	민족통일연구원 박영규정책연구실장의 1명, 하와이에서 열린 「한국통일문제관련 국제학술회의」참가
6. 24	조선역사학회 전영률회장 명의, 대남서신을 통해 「을사5조약」을 비롯한 과거 일제가 조선에 강요한 조약에 대한 진상조사 등 일제 식민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남북역사학자회담」 개최 제의
7. 9~21	이화여대 서광선대학원장등 5명,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등 북한인사 5명과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주 기독교학자회의 '92연례회의」, 참석
7. 16	북한 「직총」, 「사로청」명의, 남한 「천노협」, 「민청협」등의 단체에 「을사5조약」 날조에 대한 공동대처를 제의하고, 제3차 범민족대회 (8. 12~17)장소를 서울에서 판문점으로 변경발표

일 시	관 련 내 용
1992. 7. 18	선경 이일 대리, 연길에서 조선두만강무역회사와 한약재 반 입계약
7. 19~25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초청으로 북한의 김달 현정무원 부총리 일행 10명이 남한을 방문, 산업현장 시찰
7. 27	KNCC 총무 권호경과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 기준이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8·15직전 주일)을 기해 이를 전세계 교회와 함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 을 공동작성하여 WCC측에 전달 체육청소년부장관, 북한 국가체육위원회 김유순 위원장과 바르셀로나에서 남북체육 교류를 협의
8. 16	MBC예술단사장 변응전의 77명, 사할린 교포위문을 위한 남북합동 공연
8. 17~19	외교안보연구원 공로명원장의 2명, 상해의 「'92상해 UN군 축회의」 참석
8. 20~22	성균관대 김영학 명예교수의 101명, 「제4차 조선학국제학술 토론회」가 북경에서 개최, 참석
8. 31~9. 3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공식적으로 발효 • 민자당 윤길종고문외 253명,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40주 년 기념식 참석
9.	• 대학의학협회 김재전회장, 제27차 의료종합학술대회에 북 한의료인 초청 제의 • 사진작가회 김운영회장, 남북의 명산사진전 및 사진작가 교류 제의 • 성공회신학대학 손규태교수, 제3차 기독교 동경회의 참석 • 국토종단야생화탐사단 김태정단장, 북한지역 야생화 탐사 제의 • 대한조정협회 서승벽회장등 3명, 제5회 아시아 조정선수 권대회 북한 초청 제의
9. 1 ~ 6	전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우정부회장을 비롯한 여성제인사 (30명), 분단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개최된 세미나인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참석
9. 15~18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관련, 정원식 총무일행(90명) 방북 「남북한 교류협력 분야의 부속합의서」, 「화해 및 불 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 공식적으로 발효

일 시	관 련 내 용
1992. 9. 22~27	고합그룹 장치혁회장 일행, 석유화학·화학섬유 등 일괄생산을 위한 기초조사차 북한을 방문
10.	천도교 교령 오익제, 「천도교 남북합동봉행 및 방북 협의」 신청 • 국민대 우정하교수,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회 제2차 전체 이사회준비모임」 신청 • 쌍방울 심계균대표이사, 「내의류 임가공 및 합작사업 협의」 신청
10. 5	(주) 신강정밀 김하운 대표, 북한 만흥무역회사 병강 지사장 손주복과 남북물자교역협의
10. 6~ 9	대우 김억년비서실장등 14명, 남포경공업단지 투자타당성조사를 위한 방북
10. 9~11	경제기획원 김태연 대외경제조정실장등 7명, 두만강지역개발 관련 제2차 계획관리위원회 참석, 북경에서 북한참가단 접촉
10. 20~22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삼성총회장등 28명, 「제3회 조국의 평화통일 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 참석, 고기준(조선기독교교도연맹)등 북한대표단 5명 접촉
11.	민족통일연구원 박영규정책연구실장의 2명,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에 관한 6개국 회의」 참가 신청 (주) 오리엔트시계공업 백송주상무 외 5명, 광학기계 합작회사 설립 협의 제의 기상청 성학중예보국장의 1명, 「ESCAP 태풍위원회 제25차 회의」 참가신청 산업연구원 윤식북한연구실장, 일·북한간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실태 조사신청 한국종교협의회 이재석회장,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교류제의 (주) 샤니대표 허영인의 5명, 제빵분야 대북투자 및 교역 협의신청 한국언론학회 최창섭회장의 72명,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 참석 신청 (주) 화승 손기창사장과 조선봉화총회사 심형운총사장, 북한 신발계 현황청취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접촉 국민대 우정하교수,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협의를 위한 북한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남북협력연구소 이행호소장과 오을록부소장, 북경에서 접촉

2. 남북한 청소년교류 주요관련 일지

일 시	관 련 내 용
1960. 9. 15	고려대, 「남북통일 전국 대학생 토론회」 개최와 남북대표의 「전국통일위원회」 구성.제의하면서 통일투쟁 시작
11. 1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발기대회 개최, 남북한 서신교류 제의
11. 18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결성
1961. 4. 19	서울대 학생회, 4·19 시국선언문 발표 : 남북한 문화교류, 서신왕래, 경제교류 및 학생회담을 포함한 비정치적인 인사교류를 위한 투쟁 호소
5. 3	서울대 민족통일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 남북한 학생기자교류, 남북한 학생 학술토론회 및 예술·학문교류, 남북한학생 친선체육대회 등 4개항 결의문 채택, 남북한 학생회담 공식제의
5. 5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전국 대학교 1개 교), 남북학생회담 개최 요구
5. 6	민주당, 민족통일학생연맹의 남북학생회의 개최제안을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성명
5. 10	장면 국무총리, 남북한학생회담 불허방침 천명
5. 12	문교부, 남북학생회담설을 계기로 서울시내 32개대학 총.학장회의 소집, 학생선도책을 협의
5. 13	남북학생회담 호응군중대회(서울운동장)
5. 16	5.16 혁명
1976. 5. 6	대한축구협회 회장, 방콕의 「제18회 아시아 청소년축구대회」에서 북한 축구팀 김종형단장에게 국가대표팀 및 청소년대표, 실업대표, 대학 및 고교대표팀간의 축구교류를 제안
1980. 3. 18	남북총리회담 제4차 실무대표접촉(판문점)에서 총리회담의 제의 1항의 내용으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의 실시로 상호신뢰와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를 제의
1982. 1. 22	전두환대통령, 남북간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 상대방체제인정, 내정불간섭, 휴전체제 유지,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사회개방추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
2. 1	국토통일원장관이 20개 시범실천사업의 제10항으로 「정치인·청년학생·노동자·문예인·체육인 등 각계인사간의 상호친선방문을 실시」할 것을 제의
1986. 5. 13	북한, 사로청위원장, 남북학생회담개최 용의 시사
1987. 8. 14	서대협, 「통일염원제」 개최, 1,500명 참석

일 시	관 련 내 용
1988. 3. 29	서울대 총학생회장 임후보자, 「김일성대학 청년학생들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하여 6·10 남북학생회담제의(제1차 대북한 공개서한)
4. 4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남북학생회담에 찬동: 관문점 개최 제의
4. 16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준비위원회, 학생회담 개최 및 학생교류 제의(제2차 대북한 공개서한)
5. 14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 방안제의 (제3차 대북한 공개서한)
5. 17	북한 전국대학생연합대회, 「남한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남북학생회담 지지.찬동 및 북측준비위원회구성
5. 20	남북학생회담 북측 준비위원회, 남북학생회담 실현주장
6. 3	이현재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에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인적교류 실현문제」 협의 제의 서총연, 「6·10 남북학생회담 성취를 위한 결의대회」
6. 8	노태우대통령의 한국일보와의 서면기자회견에서 남북학생교류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 천명
6. 9	국토통일원장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서 학생교류 문제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 표명·전대협,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백만학도 총결기대회」 개최
6. 10	「6.10남북학생회담」원천봉쇄로 좌절
6. 11	「전대협」등 9개단체, 8·15 남북학생회담, 국토순례대행진, 체육대회 개최 등 제의 (제4차 대북한 공개서한)
6. 18	고려대, 「조국통일을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
7. 4	김상협 대한적십자사총재, 남북학생교류의 성사를 위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 촉구
7. 15	문교부장관, 남북학생교류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 17	북한, 남북학생교류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당국회담 거부
8. 9—8. 13	서총연, 국토순례대행진 폭력탄압 규탄 및 남북학생회담 성취를 위한 학생결기대회
8. 14	전대협, 조통협, 「조국통일염원 대동제」, 대학교
8. 15	전대협, 「남북학생회담쟁취 투쟁」, 회현, 독립문, 홍제동
12. 16	북한 조선학생위 위원장,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초청
12. 26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위원장, 「평양축전」관련 남북학생회담 제의
1989. 1. 12	정원식문교부장관, 남북학생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기구 발족 담화발표

일	시	관	련	내	용
1989.	1. 31	「남북대학생교류 추진위원회」 발족(위원장 정용석, 단국대 교수)			
	2. 1	전대협, 연세대에서 정부추진의 남북대학생교류회에 불참선언			
	2. 23	전대협,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공식참가 발표, 실무회담 제의			
	3. 13	정용석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대학생교류회담제의			
	6. 3	전대협 산하「제13차 평측참가를 위한 준비위」 발족			
	6. 6	문교부장관, 「평양축전」 참가 불허 발표			
	6. 30	임수경, 전대협 대표자격으로 평양축전 참가를 위하여 입북			
	7.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임수경, 문익환목사 참석			
	7. 7	평양에서 전대협 외장 위임에 의하여 임수경양과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창용의 명의로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발표			
	7. 20	노태우대통령, 특별발표를 통해 「8·15 민족대교류」선언			
	7. 26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우리측 58개 단체의 「범민족대회」참가거부			
	7. 30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전민련」 외의 단체 참가는 불가 선언			
	8.	「국제청소년잼버리」에 북한 참가 요청			
	8. 10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학술토론회, 문화행사, 백두-한라 대행진 공동개최를 위한 「전민련」과의 실무접촉 제의·북한 「학생위원회」위원장, 「서충련」과 실무접촉 제의			
	8. 15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 판문점을 통과하여 귀환, 연행, 구속			
	9. 18	연·고대 총학생회, 「정기연고전」 행사에 재북한 동문 및 북한학생 초청			
	9. 25	북한 학생위원회, 「연고제」에 연·고대 출신동문과 김일성종합대학생 초청 수락, 판문점에서 실무회담 개최 제의			
1990.	4.	중앙대 예술대학생회, 남북대학생 예술작품교류전 서울·평양 상호교환 개최 제의			
	4. 9	전대협, 「1천개 학과 10만명 방북신청」 운동 추진			
	5.	영남대총학생회, 세계 한민족 대학생 학술세미나에 북한학생 초청 제의			
	5. 9	경기대 판광학과, 금강산 학술답사를 위한 방북신청			
	5. 25	한민족대학생연합회(비운동권단체), 1천만 이산가족 상호왕래 및 남북학생교류 제의			
	7. 27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제3차 예비회의, 7. 30-31 평양개최 제의			

일 시	관 련 내 용
1990. 8. 10 8. 13	윤기복 「전민련」과의 실무접촉 방송제의 북한 학생위원회 위원장, 「서총련」 실무접촉 방송제의 연세대, 남쪽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개최
1991. 3 5. 8 5. 12 6. 6.14-30 7. 7. 8 7. 30 8. 21 9.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무국장이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위원장접촉 신청, 접촉목적은 남북한 청소년 공동 수로 탐사제의 및 「제11회 전국해양제전 및 아·태 청소년 해양축제」 참가요청, 일본해양소년단 사무국장을 통하여 북 한 참가자와 간접접촉 서울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제1차 평가전 평양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제2차 평가전 전대협, 7월 베를린 「남북청년학생 해외통일대축전」에 학생 파견 강행하여 박성희, 성요승 파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한 단일팀구성 참가 고려대 배우성의 15명, 북경외국어대학 북한학생 접촉 불교 청년회 배영진의 4명, 소련에서 개최된 불교전법식 참석, 북한주민접촉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 「남북체육교류 3단계 활성화 추 진계획」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선학생위원회에 편지교 환 투쟁 제안 서울지역대학생기자연합, 북한실상 방북취재신청(정부승인) 판문점에서 예비실무접촉 건국대 국어국문과(김호상)학생들이 신청한 「북한의 언어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북학술답사계획」을 위하여 판문점 에서 제1, 2차 예비실무접촉 (1차: 9.18, 2차: 9.24)
1992. 5. 8 5. 30 6.21-28 6. 30	전대협, 인공기 띄우기 투쟁 시작 전대협, 「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의,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과 조국평화통일사업담당부위 원장 축하연설 녹음으로 소개 남한의 대한호국청소년육성회 회장 이기남이 북한의 조선사 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을 한민족 역사탐방과 남북 청소 년교류 및 공동행사 참가 논의를 위하여 제3국(중국, 북경) 을 통하여 접촉 - 접촉내용: 청소년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 및 남북한 청 소년교류를 제의하고 관련 자료전달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제3차 서울범민족대회」 및 「제2차 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을 위한 판문점 예비실무 접촉 제의

3.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1) 청소년 유관단체들의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일 시	신 청 단 체	교 류 내 용
1991. 2.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 사무국장 김현리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 접촉신청 : • 남북청소년의 공동수로탐사 및 「제11회 전국해양제전 및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해양축제 참가 요청 • 91년 3월 일본해양소년단 사무국장을 통해 북한 참가자와 간접접촉 • 92년 4월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과 재접촉 시도했으나 실패
7.	서울청년회의소장 전제현	평양소년축구단 교환경기 개최 제의
7.	불교청년회 배영진외 4명	소련에서 개최된 불교전법식 참석
8. 1	한국우주소녀단연맹 총재 이상희	「93 대전엑스포 세계우주단대회」 북한 청소년 초청 제의 (정부승인)
10.	대한 스키협회 윤항구	「제2차 아시아 주니어 알파인스키대회」 초청 신청
1992. 1.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서울지회장 이승우	「남북어린이 환경보호 글짓기 공동 개최」 제의
2. 21~28	대한호국청소년육성회 회장 이기남	•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과 남북청소년교류 및 공동참가 제의 (정부승인) • 북경에서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을 접촉하여 교류 관련자료를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에게 전달요청
11.	코오롱상사 이사 원용권	「학생구간마라톤대회」에 북한 초청 제의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1991. 7~1992. 11),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체육청소년부 교류과 자료

(2) 대학생들의 북한방문 및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일 시	신 청 자	교 류 내 용
1989. 9. 7	경희대 사학과	고구려문화권 유물·유적 답사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9. 18	연고대 총학생회	「'89 정기연고제」행사에 재북한 동문 및 북한학생 초청 제의
9. 24~10. 1	전국대 국어국문학과	90년 방북학술답사 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1990. 4.	중앙대 예술대학생회	남북대학생 예술작품교류전 개최 제의
5. 8	영남대 총학생회	세계한민족 대학생 학술세미나에 북한학생(김일성종합대학 재학생) 초청 제의 (정부승인, 불성사)
5. 9	경기대 관광학과	금강산관광개발 방북학술답사 (10. 1~8)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5. 25	한민족대학생연합회 (비운동권단체)	1천만 이산가족 상호왕래 및 남북학생교류 제의
6. 2	경희대 사학과	고구려문화권 유물·유적답사 및 공동 세미나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허)
6. 27~ 8. 2	원광대 원불교학과	북한지역 심장병어린이 치료를 위한 싸이클 국토순례 신청 (정부승인 유보)
10. 12	전대협 동부지구소속 3개대학(경희대·한양대·외대 총학생회)	통일학술제 행사에 북한대학생 초청을 위한 남북대학생 접촉신청(정부승인 불허)
1991. 7.	불교청년회 배영진 고려대 배우성 서울지역대학생기자 연합	소련에서 개최된 불교전법식 참석 북경외국어대학 북한학생 접촉 • 북한학생·주민 실태를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청 • 판문점에서 남북예비실무접촉 (8. 21)
7. 29~ 8. 1	증산도 전국대학생연합회	전통적 제천의식(대천제) 백두산 거행 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8. 10~20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	백두산 통일기원 큰법회 개최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일 시	신 청 자	교 류 내 용
1991. 9.	연고대 총학생회 (조통위계열)	「'91 정기연고제」에 김일성대학 과 교수 초청을 위한 북한주민접 촉 신청 (정부승인 불허)
9.	장로회 신학대 총학생 회	남북신학생교류 협의 및 공동예 배 개최 신청 (정부승인, 불성 사)
9. 17	건국대 국어국문과 김호상 등	— 북한의 언어와 문학을 이해하 기 위한 북한지역 학술답사 방북신청 (정부승인) — 두차례 남북예비실무접촉 성 사(정부주선 9. 18과 9. 24)
10.	한양대 총학생회 (조통위계열)	한양대와 김책공대간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청 (정부승인 불허)
1992. 7. 18 ~8. 25	충남도 전국대학생연합 회	「국토종단 대장정 및 백두산개벽 대천제」 개최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7. 25~8. 10	조선대 싸이클동우회	세계싸이클일주관련 북한지역통 과 신청(정부승인 불허)
8. 6~15	충남대 총학생회	남북한 고적답사 및 순례 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8. 7~21	서울대학교 총산악회	백두산 등정 신청(정부승인, 불 성사)
8. 21~24	전국대학생원리 총학생 회	「세계대학생 총회」에 북한학생 초청 (정부승인, 불성사)
10.	서울산업대 야간 총학 생회	판문점 경유한 백두산순례대행진 을 위한 방북신청
11. 3~6	외국어대 모의 UN위원 회	남북학생 모의 UN총회 개최 신 청 (정부승인, 불성사)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1991. 7~1992. 11),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김봉구(1992), “남북대학생교류의 범위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3) 남북한 대학생들간의 편지 및 FAX교류 현황

일 시	남북한 교류대학교 및 교류내용	비 고
1991. 6.~ 9. 25	서울시립대 영문과 학생회 — 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 (1991. 6.) 학생위원회(1991. 9. 25)	편지교환
	○ 북녘학우들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 ○ 입학절차, 대학과 학생위원회의 체계와 운영 소개요구 ○ 교과과정, 강의방식, 방학생할 등에 대한 궁금증 ○ 김일성대학의 학과수, 학제 소개 ○ 입학절차, 교과과정, 대학생의 방학생할 등을 소개	
7. 27	세종대 국문과 학생회 — 개성사범대학 조선어문학과	편지교환
	○ 세종대 국문과 학생회 소개 ○ 북한의 전통놀이 종류와 놀이방법에 대한 자료요청 ○ 학술내용 교류 제안 ○ 북한의 민속놀이 소개 ○ 개성의 역사유물, 전설, 건축물 소개	
7. 30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조선학생위원회	편지교환
	○ 편지교환투쟁 제안 — 편지경로(FAX이용) : 과단위→범민련 해외본부→범민련 북측본부→조선학생위원회→이북학생회 — 편지내용 : 청년학생들간의 과교류, 이산가족찾기, 자료교환, 자매결연, 계속적인 서신왕래 등 ○ 북한의 전체대학 현황 자료요청 ○ 편지교환투쟁 지지 ○ 편지교환사업은 범청학련주도하에 폭넓은 통일대화와 자주적 교류의 기초마련을 위한 방도라고 인정	

일 시	남북한 교류대학교 및 교류내용		비 고
1991. 7. 30~9. 25	연세대 새세대동아리연합회 - 조선학생위원회 (1991. 7. 30) (1991. 9. 25)		편지교환
	○ 연세대 동아리연합회 소개 ○ 편지교환투쟁은 범청학련건설의 토대가 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	○ 남북학생간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외세와 민족분단의 고정화를 추구하는 남한 정부의 방해책동 때문 ○ 국가보안법은 자주적 교류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	
8.	서울시립대 수학과 - 김일성대 수학부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 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		FAX 교환 FAX 교환
9.	세종대 국어국문학과 - 송도대학 조선어문학과 성신여대 화학과 - 조선학생위원회 성신여대 수학과 - 평양이과대학 수학과		FAX 교환 FAX 교환 FAX 교환
	○ 학과행사소개 ○ 학술교류제안 ○ 교과목, 교재, 졸업 후 진로, 교수 1인당 학생수, 학생선발기준에 대한한궁금증	○ 학생선발기준, 교수 1인당 학수, 교과목, 졸업 후 진로 소개 ○ 학술교류와 자매결연 제안의 동의 ○ 민간교류실현을 위해서는 핵전쟁 위협 제거, 분열주의자의 반통일 억제필요	
10.	고려대 농생물학과 - 계용상대학 전대협 - 조선학생위원회		FAX 교환
10. 8	연세대 카톨릭학생회 - 평양사범대학 역사학과		편지교환
	○ 북한의 종교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피력하고 자료요청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때 임수경등 통일인사가 구원될 것 ○ 북한헌법 54조에 의하여 종교는 법적으로 보호	

일 시	남북한 교류대학교 및 교류내용		비 고
1991. 10. 8	연세대 로타렉트 — 원산농업대학		편지교환
	○ 북한 농촌에 대한 궁금증 ○ 대학생의 농촌활동 상황 ○ 협동농장의 북한농촌	○ 북한 농업협동화 완성배경 ○ 협동농장의 기본조직과 편의시설 ○ 남한분열주의 책동을 막는 것이 통일 의 지름길	
10. 19	고려대 의대 의학과 학생회 — 평양의과대학 학생위원회		편지교환
	○ 민족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전쟁반대 평화통일 다짐 ○ 미국과 한국정부가 제기하는 연변 핵시설에 대한 궁금증 제기 ○ 고려연방민주제에 대한 이북 학생들의 의견 ○ 이북의 의학교육, 무상의료제도, 의료체계에 대한 설명요구	○ 이북의 교육제도 소개 ○ 이북의 무상의료제, 의사담당기구 소개 ○ 반핵·군축문제에 대한 설명 ○ 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을 쉽게 하더라도 평화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	
10. 27	고려대 언어학과 학생회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과 학생위원회		편지교환
	○ 일반적 가치관에 대한 궁금증 ○ 인생최고의 보람과 가치, 연애관, 남북사회에 대한 시각 ○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	○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은 조국과 민족의 번영 ○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 민족통일 대행진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다짐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1992. 11),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김봉구(1992), “남북대학생교류의 범위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4. 남북한 교류 주요 합의서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을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행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

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2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2)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 3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

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복

(3) 제 7 차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 1 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②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③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④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 울

(4)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 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 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 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북

(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농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 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등 상대적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방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은 왕래하는 인원들이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문화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와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Ⅲ.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목록

〈남북한 관계〉

김동성(1989),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평가”, 동아일보사,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 남북한 통일방안심포지엄, 11-26.

국토통일원(1976),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개선방안연구.

국토통일원(1989),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 비교.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1989), 민주통일론 : 통일문제.

국토통일원(1990), 통일문제의 정치외교사적 갈등과 극복.

국토통일원(1991), '91통일환경 변화 평가 및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

통일원(1991),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관계.

통일원(1991),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김명기(1984), “남북한 교차승인에 관한 연구”, 통일논총, 4(2), 국토통일원, 154-190.

김명기(1990), “통일을 위한 남북한 신뢰구축방안”, 통일문제연구, 2(4), 112-130.

김부기(1989), “소련의 감군과 남북한 평화공존 및 군비통제”, 통일문제연구, 1(4), 9-30.

김성주(1992. 8), “8·15와 한반도통일의 과제”, 기러기, 16-22.

김성희(1991. 11), “민족통일과 여성의 참여”, 민족통일, 33-35.

김영재(1990), “남북한의 평화체제 접근 추이 및 새로운 방안”, 통일문제연구, 2(4), 국토통일원, 35-58.

김일주(1990. 2),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 내부의 신뢰구축”, 기러기, 15-21.

김주한(1989. 봄), “남북한 통일관의 지속성과 변화”, 역사비평, 34-42.

김진균(1988),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김집(1992. 5), “합의서의 이행은 쌍방의 실천의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북한, 32-37.

- 김창순(1978), “민족관의 차이와 남북한 관계”, 통일문제연구, 7, 영남대, 1-13.
- 김학준(1990. 10), “최근 독일통일의 맥락에서 본 남북한 관계의 장래”, 기러기, 21-25.
- 김학준(1978), “남북한 국제환경의 비교분석”, 통일문제연구, 7, 영남대, 123-130.
- 김학준(1987), “북한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하나의 문헌집”, 통일문제연구, 5, 건국대부설 중국문제연구소, 99-117.
- 남주홍(1990),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분쟁해결”, 유세희·이정식, 전환기의 북한, 189-200.
- 데이비드 리즈(1978), “한반도의 갈등”, 통일정책, 4(3), 143-171.
- 도홍렬(1985), “세대문제로 본 남북한 관계”, 북한학보, 9, 137-165.
- 림춘웅(1992), “북한의 UN가입결정 그 배경과 함축”, 기러기, 10-15.
- 마병식(1990), “남북한 체제 접근을 통한 신뢰조성방안의 모색: 남북한 체제 극복을 위한 이념 정당” 국토통일원, 대학생 통일논문집, 3-28.
- 문정복(1977), “Ideology적 측면에서 본 남북평화정착의 문제”, 통일문제연구, 6, 영남대, 9-16.
- 민병천(1986), “통일방안의 신모색”,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10, 149-176.
- 민병휘(1978),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통일문제연구, 7, 영남대, 131-139.
- 박관용(1991. 11. 12), “UN동시가입과 남북관계 개선방향”, 민족통일, 44-47.
- 박동운(1991. 5), “통일전선의 이론과 '95년 통일설”, 북한, 55-69.
- 박동희(1978),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문제연구, 2, 영남대, 25-37.
- 백승주(1983),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교차승인의 비판적 검토”, 통일논총, 5,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171-190.

- 변경섭(1991), “90년대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통일산책, 72-86.
- 손양수(1982), “남북한 통일목표에 대한 비교 고찰”, 통일문제연구, 조선대, 17-32.
- 송병순(1978), “북한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한 남북한 정신전력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7, 영남대, 27-37.
- 송재국·진용옥(1990), “남·북 방송시스템의 상이성과 그 극복방안”, 방송연구, 2-34.
- 신상초(1988. 7), “7·4 공동성명과 남북한 관계”, 북한, 32-35.
- 신일철(1990. 5), “남북한 관계의 극적 타결은 가능한가”, 전망, 26-29.
- 안상원 외(1991),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교육”, 통일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60-74.
- 양홍모(1991. 9), “남북한 유엔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18-21.
- 우 정(1991. 9), “남북한 체제접근에서의 재구성적 현실성의 이론화(Ⅰ)”, 북한, 121-132.
- 우 정(1991. 10), “남북한 체제접근에서의 재구성적 현실성의 이론화(Ⅱ)”, 북한, 121-128.
- 유성옥(1986), 남북한 통일문제에 나타난 갈등구조, 고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 유영국(198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과 실효성 검토”, 통일논총, 5, 부산대 통일문제연구소, 147-169.
- 유인택(1990. 8), “남북 쌍방의 통일의지가 통일의 관건”, 북한, 157-165.
- 유인택(1991. 여름),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관계”, 국책연구, 184-195.
- 윤일홍(1977), “남북한 경제역량 비교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6, 43-78.
- 이기원(1991. 12),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 북한, 57-62.
- 이기원(1992. 3), “남북한간의 합의서는 현실화될 것인가”, 북한, 18-21.
- 이기원(1992. 7), “7.4 남북공동성명의 재음미”, 북한, 18-21.

- 이상우(1990), “남북한 통일정책의 이론구조 비교 : 민족성원 모두의 번영과 계급투쟁의 대결”, 동아연구, 18, 79-111.
- 이서항(1990), “남북한 군비통제방안 비교” 통일문제연구, 2(4), 59-81.
- 이우영(1979), “남북한의 대비동맹국 외교경합 분석”, 통일문제연구, 8, 영남대, 57-83.
- 이옥우(1977), “남북한 관계의 제문제”, 통일문제연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6, 5-23.
- 이장희(1991. 9. 10), “평화체제전환에 따르는 범규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족통일, 20-32.
- 이종석(1988. 9), “남북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사회와 사상, 95-107.
- 이천재(1991. 11. 12), “조국통일과 적대관계 청산”, 민족통일, 28-32.
- 이 한(1990),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온누리.
- 장민석(1989), 코리아니즘 선언, 선영사.
- 장청수(1992. 2), “북한 '불가침'이행만이 체제위기 극복”, 북한, 42-50.
- 전득주(1985), “남북한 관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통일논총, 5(2), 61-80.
- 전정환(1991. 9), “남북한 UN가입과 남북한 관계전망”, 북한, 22-29.
- 전정환(1992. 4), “남북관계, 기대와 현상”, 북한, 18-21.
- 정상용(1992. 1), “남북합의서 서명에도 부정적 시각 여전”, 북한, 205-211.
- 정석홍(1992. 8), “남·북간 합의서 채택의 배경과 전망”, 북한, 22-30.
- 정용길(1992. 8), “8.15와 통일”, 기러기, 10-15.
- 정윤무(1986.5), “북한의 대남정치사상전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 173, 100-103.
- 지선스님(1991. 11. 12),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방향”, 민족통일, 15-20.
- 진덕규(1985), “정치체계의 갈등과 통합에 관한 이념적 인식: 한반도에서의 통일론의 모색”, 동아연구, 16, 161-216.
- 진형용(1990. 8), “시대별로 본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북한, 62-73.

한국자유총연맹(1991),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

한승조(1986. 5), “맹목적 적대와 과학적 적대의 논리”, 북한, 173, 96-99.

황성모(1991. 5),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북한, 48-54.

〈남북한교류〉

강광식(1992. 2), “경제·사회 공동체로의 지향, 교류협력”, 북한, 52-61.

강현두(1991), “남북한 방송교류의 현황과 미래의 모색”, 방송문화연구, 31-42.

고병철(1989), “남북한교류협력의 정치적 측면”,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87-186.

교육개발원(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국토통일원(1971), 남북교류안 검토 및 국내외 여건이 이를 강요할 경우의 대비책.

국토통일원(1971),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 가능성과 국제적 중재 및 보장 방안.

국토통일원(1972), 남북교류문제 연구논문집.

국토통일원(1972),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국토통일원(1972), 남북한 학술수준의 비교검토.

국토통일원(1972), 남북한 학술교류 기본방안.

국토통일원(1972), 남북한 체육교류방안.

국토통일원(1972), 남북교류에 대비한 북한의 제반 위약점의 도출 및 대비책.

국토통일원(1973), 비정치분야의 교류실천전략.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 종교인 접촉대화방안.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 사회단체의 교류방안과 대비책.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 과학기술자 교류방안.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 의료기술협력방안.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 민속예술교류 및 대외협력방안.

국토통일원(1973), 남북한 언어공동연구방안.

국토통일원(1973), 남북교류에 따른 남북주민통제와 우리의 대비책.

국토통일원(1974),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종합대책.

국토통일원(1974), 남북한 사회단체교류에 관한 대비책.

국토통일원(1976), 남북접촉을 위한 이론의 정립.

국토통일원(1976),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위한 장기대책 : 세미나 결과보고서.

국토통일원(1977), 남북한이 공동참가하는 각종 국제회담 및 행사를 이용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1977), 남북대화 및 교류시에 대비한 정당·사회단체 육성방안.

국토통일원(1978), 남북교류협력 유도방안.

국토통일원(1984),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 제의에 대한 사례별 대응 실천방안 연구.

국토통일원(1985), 남북한 사회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방안.

국토통일원(1986),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토통일원(1988), 남북 인적교류 추진방안.

국토통일원(198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통일원(1990), 남북교류협력 방안연구.

통일원(1990), 1990 통일백서.

통일원 교류협력국(1991. 7~1992. 11),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김성운(1991. 6),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교역”, 북한, 46-53.

김용재(1991. 6), “남북교역의 전망과 유의사항”, 북한, 34-44.

김창순(1990. 8), “민족대교류와 범민족대회”, 북한연구소, 북한, 24-29.

김태완(1991), “한국의 교육통합정책”, 교육개발, 13(4), 50-53.

김태완·박재윤(1991),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남영진(1991. 6), “남북교역의 어제와 오늘”, 북한, 24-32.

민주이념발전위원회(1991), “남북학자 교류방안”, 자유민주적 질서정착을 위

- 한 제과제(Ⅲ), '91 민주시민논단, 65-77
- 박두권(1991. 8), “남북한의 과학기술 교류”, 기러기, 6-8.
- 박재윤·백성준(1992. 6), “남북한 정치교류·통합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 북한, 150-155.
- 박주한(1985), 남·북한의 스포츠 대전과 스포츠 회담에 관한 연구, 한양대 체육학과 석사논문.
- 북한 편집부(1991. 6), “북한산 물자반입 가이드”, 북한, 54-73.
- 북한 편집부(1990. 9), “범민족대회 시말기”, 북한, 42-50.
- 안춘옥(1991), “남북한 방송교류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송문화연구, 13-30.
- 윤동현(1990. 1), “진실된 남북교류를 촉구한다”, 북한, 36-59.
- 윤병익(1976), “분단국가의 통합이론에서 본 다각적인 남북교류제의 평가”, 평화통일 연구소, 통일정책, 2(2), 63-76.
- 윤병익(1984),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 통일논총, 4(2), 105-127.
- 이동복(1976), “남북 고미술품 및 고고학자료 공동전시 또는 교류전시 제의의 의의”,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2(2), 210-217.
- 이만기(1984),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 통일논총, 4(2), 128-153.
- 이문규(1988), “남북한 통합의 이론적 모색”, 통일연구논총, 8(1), 국토통일원, 9-62.
- 이장춘(1992. 1), “관광이 과연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북한, 148-161.
- 이정춘(1990), “남북 방송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35-77.
- 이창호(1990. 9),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36-41.
- 이학내(1992), “한민족화합을 위한 남북체육교류의 진전과 전망”, 분단국에 있어 체육교류의 정치사회적 기능.
- 정대규(1980),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6(2), 112-127.

정무장관(제2)실(1991),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최상철(1989), “남북체육교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의 모색: 통일 가족논문집, 제1집, 국토통일원, 169-252.

하동룡(1991. 9), “북한 방송계의 현황과 남북방송교류 전망”, 북한, 64-71.

〈남북한 대화〉

곽태환(1983), “남북한 대화타개를 위한 이론적 접근”, 통일논총, 3(2), 35-51.

국토통일원(1988), 남북대화 백서.

김달술(1985), “남북대화의 발전전망과 그 한계성”,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9, 191-210.

김달술(1988), “남북대화의 평가와 남북관계의 재정립”, 국토통일원, 통일연구논총, 8(1), 63-100.

김래현(1990. 3), “남북회담, 왜 이 모양인가”, 통일한국, 27-31.

박용구(1981), 북한의 남북대화 방식에 관한 연구: 북한측의 대화전술에 관련하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석성악(1984), “남북회담장소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11, 49-67.

신정현(1989), “남북한 대화의 국내외적 환경”, 통일문제연구, 1(1), 국토통일원, 9-36.

안병준(1987), “남북대화의 축진을 위한 제방안”, 통일연구논총, 7(2), 국토통일원, 133-142.

오관치(1991), “남북대화를 통해서 본 북한의 대남정책”, 통일문제연구, 3(2), 172-206.

유석렬(1984), “남북회담장소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11, 69-83.

유석렬(1986. 4), “북한의 대화전략, 그 속셈”, 북한, 172, 50-55.

- 유완식(1991. 7), “정부의 남북대화정책, 기조”, 북한, 34-40.
- 유인택(1990. 8), “남북 쌍방의 통일의지가 통일의 관건”, 북한, 157-165.
- 윤경태(1980), “남북한 실무접촉의 결과와 남북대화 전망”,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6(3, 4), 64-78.
- 이강은(1991), “남북고위급 회담 추이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3(2), 207-231.
- 이삼열(1990), “남북대화와 민족분단의 극복”, 한국사회와 대화문화,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출판사, 131-146.
- 이상열(1990), “남북대화의 문제와 평화통일의 길”, 통일문제연구, 2(2), 국토통일원, 273-305.
- 이영일(1979), “남북대화 타개방법론 연구”, 통일문제연구, 8, 영남대, 25-55.
- 장수근(1990. 8), “남북정상회담은 20년 장정의 종착역”, 북한, 22-27.
- 최문현(1977), “남북대화의 분석과 전망”, 통일문제연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6, 83-94.
- 최평길(1984), “북한의 남북대화 전개양식 분석”, 통일논총, 4(1), 19-47.
- 〈남북한 분단문제〉
- 강인덕(1985. 2), “분단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통일홍보의 기본방향”, 통일, 41, 민족통일중앙협의회, 42-47.
- 국토통일원(1976), 분단국가로서의 한반도의 본질.
- 국토통일원(1987), 분단체제의 상황과 민족통일의 모색.
- 김강경(1986), “한반도 분단사의 재조명과 통일방안모색”, 통일논총, 3,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87-99.
- 김병오(1985),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한울.
- 김준희(1975), “분단국가 일반이론에서 본 한국 통일문제의 법적 성격”, 통일정책, 1(2), 85-115.

박현채·한상진(1986), 해방 40년의 재인식 , 돌베개.

변경섭(1992. 8), “화해·협력 시대의 남북관계”, 북한, 92-112.

변형운(1985),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사회와 사회(1990),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한길사.

이흥구외(1985),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정용대(1991. 10), “한반도의 통일과 방향설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시각”, 북한, 92-99.

정용석(1987),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5, 건국대부설 중국문제연구소, 83-98.

정천구(1985),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그 구조적 성격”, 통일논총, 5(2), 7-25.

통일문제연구소(1990), 분단과 통일의 역사, 민족통일.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1986), 한국현대사 3, 풀빛,

〈남북한 청소년교류〉

김동춘(1988. 여름),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 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31-48.

김봉구(1992), “남북대학생교류의 범위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김민호(1988. 여름),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92-118.

김진균·이병천·김형기·서관모·박진도·조희연(1990), 한국사회론, 한울.

김창운(1992), 민족자주화운동의 발자취, 대동.

도홍렬(1990. 12), “남북 대학생교류 장애요인 극복방안”, 분단국교수·학생교류추진학술세미나, 제2회 학술회의, 남북교수·대학생교류자문위원회·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남북교수학술교류추진위원회, 37-63.

박승희(1990. 9), “홍사단의 통일운동 방식론의 모색”, 기러기, 16-21.

서중석(1992. 봄), “해방후 남한의 우익민주주의와 민족통일전선”, 역사비평, 362-382.

서중석(1988. 여름),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운동”, 역사비평, 68-92.

서중석(1991. 가을),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 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서창배(1990),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모색 : 대학인의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대학생통일논문
집, 241-279.

신철균(1992), “통일을 위한 청소년의 육성방향과 과제”, 기러기, 4-9.

윤석인(1988. 9), “88년도 여름의 조국통일운동”, 사회와 사상, 120-137.

윤석진(1989. 9), “가을학생운동을 말한다.”, 월간중앙, 370-383.

이재오(1984),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이종오(1988. 여름), “반제반일 민주주의와 6·3운동”, 역사비평, 49-67.

정대화(1989. 7), “7·7선언과 7·1 평양축전”, 월간중앙, 150-159.

정용석(1992), “대학가 변화양상과 남북대학생교류 추진방향”, 남북교수·대학생
교류의 전망과 추진방향, 남북교수대학생교류자문위원회·남북대학생 교류
추진위원회·남북교수학술 교류추진위원회, 제4회 학술회의, 15-22.

조지훈(1989),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독일 사례〉

강태영(1991), “통일전후의 독일방송 현황”, 방송문화연구, 3-12.

계몽사(1985), “분단 베를린”, 마당, 46, 161-175.

국토통일원(1973), 서독의 동서독 협상대비전략카드.

국토통일원(1974), 동서독교류사례와 남북한의 적용가능성.

국토통일원(1978), 동서독 각종교류와 관련된 제문제 및 해결실태.

국토통일원(1981), 동서독관계 발전유형과 한반도 도입가능성연구.

국토통일원(1982),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경과.

국토통일원(1984), 동서독관계를 모델로 한 남북한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대책.

국토통일원(1985), 동서독의 통일정책.

국토통일원(1989), 10년간의 독일정책(1969-1979).

통일원(1990), 통일독일과 한반도.

김병영(1991. 11. 12),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민족통일, 21-27.

김상규(1988. 8), “독일문제에 대한 동서독의 인식과 태도”, 전망, 22-35.

김승만(1992. 6), “높아진 독일 통일의 위상 외교노선 독자성 발휘 부담 크지만 흡수가능”, 북한, 144-149.

김연수(1978), “동·서독의 교류와 한반도 통일”, 통일정책, 4(3), 106-112.

김연수(1986), “동서독의 평화공존과 게르만 민족”, 민족통일, 59-64.

김현주(1990), “독일의 통일뒤에는 동·서독의 끊임없는 방송교류가 있었다”, 방송, 72-77.

박동희(1977),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과의 논리적 관계”, 통일정책, 3(1), 95-102.

박동희(1978), “평화정착면에서의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 통일정책, 4(2), 88-111.

박봉식(1990. 3), “독일통일 vs 통일한국”, 통일한국, 14-26.

박성조(1989. 12),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가 남북한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1(4), 32-92.

박영호(1984), “독일의 분단 극복의지, 동·서독 교류의 오늘”, 치안문제, 68, 36-42.

방송연구 편집부(1990), “TV분야 협력을 위한 서독 ARD와 동독 DDR-TV간의 협정”, 방송연구, 130-133.

백봉흠(1978), “동서독 기본조약과 한반도의 특수상황 비교 고찰-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경영경제논총, 4, 33-57.

뢰거·크레멘탈(1979), “동·서독의 분단체제 구조”, 김병국 역, 통일정책, 5(4), 258-271.

손정인(1991), “통일독일의 현실과 교훈”, 이화, 47, 28-44.

- 손형중 역(1975), “동서독 기본관계 문헌”, 통일정책, 1(2), 234-279.
- 서병철(1988),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지식산업사.
- 신용철(1982),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2(4), 153-183.
- 신용철(1990),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의 교류에 주는 시사”, 통일문제연구, 2(1), 102-155.
- 신용철(1991), “동·서독간 교육관계의 발전과 통일”, 교육개발, 13(4), 46.
- 신용철(1991), “동·서독의 접근과 인적 교류”, 평화연구, 3(1), 195-210.
- 신 찬(1982), “서독 정치교육 실태를 돌아보고 : 상·하”, 자유공론, 185, 136-143 : 187, 141-149.
- 얀스 헤커(1984), “독일의 통일문제”, 정우, 4(1), 54-55.
- 양영식 역(1975), “분단 독일의 법적 상황에 관한 15가지 명제”, 통일정책, 1(2), 280-291.
- 양혜숙(1983), “독일민족의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기러기, 214, 12-17.
- 연합통신(1990),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평화당.
- 윤근식(1984), “독일에 있어서의 민족문제”, 민족통일, 14-21.
- 이강걸(1981), “분단국 동서독과 남북한”, 자유공론, 174, 104-111.
- 이장희(1986), “공산주의 분단국 헌법과 통일문제 - 동독 헌법과 북한 헌법상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통일논총, 6(2), 77-107.
- 이장희(1988), “한반도에서의 동서독 통일모델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논총, 8(1), 101-145.
- 이장희(1990), “동서독 통행협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1), 252-277.
- 이장희(1991), “독일통일과정과 UN”, 통일문제연구, 3(3), 72-100.
- 이정희(1984), “서독의 통독정책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
- 이태영(1976), “동서독의 민족이론 평가”, 통일정책, 2(4), 95-103.
- 이태영(1976), “서독의 통독대비정책 연구”, 통일정책, 4(4), 212-233.

- 이태영(1987), “독일통일의 제문제”, 통일문제연구, 5, 전국대부설 중국문제연구소, 71-82.
- 이태영(1990. 9), “독일통일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이론적 성격”, 사회와 사상, 135-155.
- 이태영(1991. 11), “통일독일속의 동독”, 북한, 142-150.
- 장석은(1984), “최근의 동·서독 관계와 교류현황”, 통일, 36, 70-76.
- 장석은(1986), “독일 청소년의 통일교육”, 북한, 57, 27-54.
- 장석은(1991), 분단국 통합과정, 통일연수원.
- 전득주(1984), “동·서독 관계의 발전과정과 그 중간결과”, 통일논총, 2,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57-76.
- 전득주(1990. 2), “동·서독 관계의 회고와 전망”, 기러기, 9-14.
- 정용길(1983), “한반도 분단의 배경 : 동서독 분단과정과 한반도”, 북한, 138, 84-91.
- 정호열(1985), “동서독의 상호교류 어디까지 왔나”, 치안문제, 68, 36-42.
- 조용남(1991), “통독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통일문제연구, 3(3), 323-358.
- 체육부(1985), 서독의 체육정책 : Der Goldene Plan.
- 체육부(1985), 서독의 체육정책 : Trimming 130.
- 체육부(1987), 동서독 스포츠관계(1949-1961).
- 칼·하이츠·니콜라우스(1978), “독일의 통일이념과 동독승인문제”, 장영민 역, 통일정책, 4(3), 126-142.
-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1992), 독일통합실태연구.
- 하야시 겐타로(1978), “독일에서의 분열국가 성립과 통일의 과제”, 통일정책, 4(4), 76-84.
- 한태수(1971), “서독의 통독 신전략 분석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요소”, 통일논총, 2(2), 141-156.
- 황성모(1990), 통일독일 현장연구, 일념.

Bunjes, Ulrich(1986. 7), “Eine Zarte Pflanze”, Deutscher Bundesjugendring, Jugendpolitik, 4-7.

Eisenmann(1991. 2), Die Jugend in der Neuen Bundesländern Sozialistische Besusstseinsvildung and Ihre Folgen.

Förter, P. & Friedrich, W.(1992. 9. 11), Politische Einstellungen und Grundpositionen Jugendlicher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8/92.

Gemeinsame Presseerkll Rung des Zentralrats der FDJ und des Deutschen Bundesjugendrings von 20. sep. 1982 zum Jugendtourism.

Reicher(1991), “독일의 교육통합체제 개발을 위한 정책”, 교육개발, 13(4), 44-45.

Sauerhöfer, Werner(1992), “Die Jugend-verband S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er Bundesjugendring, Kein Alter Zum Ausruhen, 151-166.

Scharf(1990), “동·서독 방송의 분단극복 역할”, 방송연구, 107-129.

Verfragüber den Austausch von Jugendreisegruppen Zwischen dem Reisebro der FDJ.

Westezmann, Klans(1986. 7), “Was heißt Normalität?”, Deutschez Bundesjugendring, Jugendpolitik, 3.

〈민족공동체〉

강광식(198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접근 방법론적 고찰”, 통일문제 연구, 1(4), 260-277.

김명기(1990. 3), “한민족공동체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북한, 176-184.

김성수(1990),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따른 법적 문제와 방안”, 국토통일원, 대학생 통일논문집, 209-239.

김종립(1990), “민족공동체의 이론구조”,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모색.

- 김택수(1990),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고찰”, 국토통일원, 대학생 통일논문집, 281-309.
- 김형효(1986. 4), “통일은 냉정한 민족공동체실리의 정착화”, 북한연구소, 북한, 172, 106-111.
- 김학준(1989), “민족공동체와 남북한 체제연합 연구: 제6공화국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배경”, 통일문제연구, 1(3), 9-32.
- 김학준(1991. 11. 12), “통일의 전망과 민족동질성의 회복”, 남북의 여성과 통일, 제8회 학술세미나 자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9-22.
- 문용린(1990. 10), “민족동질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략 - 교육내용적 측면”,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8(3), 43-50.
- 문용린(1991. 5),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기러기, 15-20.
- 박한식(1990),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조성”,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형성의 모색.
- 서시주(1991. 5), “김일성의 민족통일 정치협상론과 범민련”, 북한, 70-81.
- 신정현(1990), “한민족공동체의 실현방안”,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모색, 97-124.
- 신정현(1990. 5), “통일을 위한 민족화해 - 남북간의 화해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기러기, 11-20.
- 유관지(1992. 2), “늪우침을 뿌리로 용서를 줄기로 할 때 맺는 열매”, 북한, 32-41.
- 이문규(1988), “남북한 통합의 이론적 모색”, 통일연구논총, 8(1), 국토통일원, 9-62.
- 이상두(1985), “남북한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응방향”,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9, 167-189.
- 이상우(1990),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로”, 통일문제연구, 2(4), 131-152.

- 이영덕(1990. 10),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8(3), 7-13.
- 이향진(1990), “남북통일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남북한 예술교류와 관련지어”, 국토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정치분야, 335-411.
- 장명봉(198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1(4), 235-259.
- 장석은(1990),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교육제도적 측면”, 교육학연구, 28(3), 53-59.
- 장세근(1990. 2),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이념적 토대”, 북한, 191-203.
- 장세근(1990. 3),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이념적 토대(Ⅱ)”, 북한, 186-191.
- 정석홍(1990), “민족동질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략-교육내용적 측면”,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8(3), 53-59.
- 진덕규(1985), “정치체제의 갈등과 통합에 관한 이념적 인식: 한반도에서의 통일론의 모색”, 동아연구, 16, 161-216.
- 하영선(1989), “통일접근과정으로서의 민족공동체 형성 모색”, 통일문제연구, 1(1), 국토통일원, 75-87.
- 황성모(1977),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주의”,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3(4), 177-187.

〈분단국 사례〉

- 콜프리드·칼·킨더만(1976), “분단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위기조정”, 통일정책, 2(2), 286-292.
- 국토통일원(1986), 분단국 통합사례연구.
- 국토통일원(1986), 분단국통합사례연구.
- 국토통일원(1990), 예멘통일관계자료집.

통일원(1991), 예멘통일관계자료집(Ⅱ).

김기동(1990. 7), “중화민국의 ‘국가통일신념’에 대한 고찰”, 북한 144-154.

김승수(1990), “중국의 언론과 정치사회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중소연구, 14(1), 한양대 중소연구소, 87-124.

민주이념발전위원회(1991), “분단국 통일의 유형”, 자유민주적 질서정착을 위한 제과제(Ⅲ), '91 민주시민논단, 193-230.

박찬익(1989), “중국 경제개혁의 배경과 전망”, 통일문제연구, 1(1), 국토통일원, 250-283.

송영대(1982), 분단국가와 통일 : 한국·독일·중국의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신세호(1991), “분단국의 교육통합정책”, 교육개발, 13(4), 40-43.

신용철(1982), “4개 현대화와 중공의 교육”, 중소연구, 4(1).

양영식(1976), “분단국 비교정치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2(2), 293-307.

양영식(1985), “분단상황의 순기능·역기능적 요인과 변화 가능성”, 통일정책, 5(2), 221-255.

오진룡(1981), “중공과 대만사이, 대만의 장래”, 신동아, 208, 134-142.

오태진(1990. 7), “남북예멘, 예멘공화국 수립을 선언”, 북한, 138-143.

위 용(1980), “국가의 분단과 통일”, 통일정책, 6(3.4), 187-201.

이계희(1978), “분단국가의 민족문제”, 통일정책, 4(3), 113-125.

이남규(1990. 1), “동구 개혁물결에 고민하는 중국과 북한”, 전망, 74-79.

이문규(1990), “중국의 통일정책: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2), 306-339.

이장희(1989),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문제연구, 1(3), 33-70.

이정춘·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청림출판.

장공자(1986), “분단국가 중국의 장래”, 민족통일, 43-51.

장공자(1990. 7), “대만의 대중국정책의 변화와 통일전망”, 전망, 56-61.

장석은(1991), 분단국 통합과정, 통일연수원.

전낙희(1982), “중공의 통일정책과 대만의 옵션”, 국제문제, 137, 118-128.

조성환(1991), “중국·대만의 통일노력과 UN”, 통일문제연구, 3(3), 157-186.

조순환(1992), “교류 본격화하는 중국과 대만”, 통일한국, 65-67.

주태산(1990. 11), “북경의 남과 북, 막오른 남북교류”, 북한, 97-103.83-94.

최창윤(1979), “분단국의 정통성에 관한 연구”, 북한, 94, 138-148.

통일문제연구 편집부(1989), “「분단국 통일론」 서평”, 통일문제연구, 1(1), 국토통일원, 302-306.

프랑시스 정·마리 끌레르 베르제르(1980), “중국의 민족문제와 통일”, 문무공역, 통일정책, 6(1), 158-181.

홍성국(1990. 7), “분단상황하의 경제구조”, 북한, 128-137.

홍순남(1991), “남북예멘의 통일정책과 UN”, 통일문제연구, 3(3), 101-156.